

정책연구 2009-3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2009. 7

제주발전연구원

# 발 간 사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입법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1997년에 국가적 위기로 치달은 소위 IMF 외환위기는 국가 재정 뿐 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기간 동안에 회사의 부도 및 구조조정은 파산,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대량실업의 급증, 비정규직 증가,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는 더욱 국가적 현안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국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컨대, 신빈곤층의 증가, 비정규직의 급증, 사회적 서비스 수요증대, 분권교부세 폐지, 청년실업대란, 세계경제위기의 도래,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등)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분권교부세 폐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복지의 질적 수준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의 다양한 부문(예컨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도 복지재정 확충을 더욱 촉구하는 현실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앙 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나름의 정책 방향과 운영 계획

을 수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권교부세 전개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지역으로 거듭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재정 확충 방안과 운영 방향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9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유 덕 상

#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	3
4. 연구방법 .....	4
5. 연구의 기대효과 .....	4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 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	5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	5
2.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분석 .....	13
3.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	32
4.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관련 몇 가지 문제점 .....	37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	40
1. 조사의 설계 .....	40
2.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	42
제4장 결론 .....	71
1. 요약 및 결론 .....	71
2. 정책적 제언 .....	81
□ 참고 문헌 .....	86
□ 부 록(설문조사표) .....	87

## 〈표 목차〉

〈표 2-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지방이양 실적 .....	6
〈표 2-2〉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	7
〈표 2-3〉 지방이양사무 주요 제도개편 내용 .....	8
〈표 2-4〉 전국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표 .....	10
〈표 2-5〉 지방이양사업의 수요 유형 및 예산배분 현황 .....	10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연도별 현황 .....	11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사업 예산 현황 .....	12
〈표 2-8〉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예산변동 현황 .....	13
〈표 2-9〉 2007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시도별 예산 현황 .....	14
〈표 2-10〉 지방이양사업 세부사업 구분 .....	15
〈표 2-11〉 전국 노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현황 .....	16
〈표 2-12〉 제주 노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	19
〈표 2-13〉 전국 장애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	21
〈표 2-14〉 제주 장애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	22
〈표 2-15〉 전국 아동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	25
〈표 2-16〉 제주 아동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	27
〈표 2-17〉 전국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	29
〈표 2-18〉 제주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	31
〈표 2-19〉 포괄보조금 도입 시 계정의 설계(안) .....	35
〈표 2-20〉 내국세 1.43% 산정근거 .....	36
〈표 3-1〉 응답 복지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	43
〈표 3-2〉 기관(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별 교차분석표 .....	45
〈표 3-3〉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	46
〈표 3-4〉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	47
〈표 3-5〉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	47
〈표 3-6〉 개인독지가(혹은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규모 .....	48
〈표 3-7〉 기관(시설)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	49
〈표 3-8〉 설립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	50
〈표 3-9〉 유급직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	51
〈표 3-10〉 수용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	52
〈표 3-11〉 수용외 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	53
〈표 3-12〉 복지기관 예산 총당 방법 .....	54
〈표 3-13〉 복지재정 충분 인식 정도 .....	54
〈표 3-1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정도 교차분석표 .....	56

<표 3-15> 복지재정의 부족 이유 .....	57
<표 3-1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부족 원인 교차분석표 .....	58
<표 3-17> 복지기관 재정충당 계획 여부 .....	59
<표 3-1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계획여부 교차분석표 .....	60
<표 3-19> 향후 재정 충당 방법 .....	61
<표 3-20>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방법 교차분석표 .....	62
<표 3-21> 복지기관의 재정 확충 방안 .....	63
<표 3-22>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	64
<표 3-23> 재정 운영의 중·장기 계획 여부 .....	65
<표 3-2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자체 재정 운영 중·장기 계획 여부 .....	66
<표 3-25>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	67
<표 3-2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	68
<표 3-27> 재정적 독립 우선 영역 .....	68
<표 3-2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적 독립 분야 교차분석표 .....	69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경제체제는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시장경제 중심의 경쟁사회로 변화하게 됨. 그래서 개방경제의 확산은 시장의 자율성과 규제완화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짐.
- 시장에서 무한경쟁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특히 농업)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예컨대,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1997년 12월부터 불어 닥친 소위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정리해고 및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적 지원을 경주하였음.
- 10년이 지난 2008년 8월부터 우리나라는 제2의 IMF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내 실물경제의 악화, 기업의 수출 및 투자 부진, 정리해고와 고실업 발생, 그리고 소비위축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리라 예상됨.
-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퇴출된 일반 노동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신빈곤층으로 전락,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자의 급증 등으로 인해서 서민생활의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증폭될 것임.
-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복지재정 확충을 통해서 서민생활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개선하는 일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

## 제1장 연구의 개요

- 그런 맥락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지 재원과 관련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김중순, 2006; 박병현, 2008; 손희준 외, 2008).
- 제주특별자치도(2006. 7. 1. 출범)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하에서 제주지역의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운용 방식은 특별자치도 이전과는 상이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예산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거 시·군(특별자치도 이전)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제주계정의 설치·운영은 종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던 국고보조금과 7개 특별행정기관(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받는 것임.
- 이런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 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의 안정적 증대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5년부터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중앙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방이양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운영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2008)
- 분권교부세 제도가 2005~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폐지하고 다양한 대안(예컨대, 보통교부세,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분권교부세 제도의 유예,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등)들이 모색되고 있음.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어떤 형태로든 귀결될지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서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일정기간 동안 존속할 것으로 보임. (곽채기, 2009)
-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분권교부세의 폐지는 지방분권과 지역복지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정부의 분권교부세 제도가 어떤 형태로 재정립되면 일정 부분 국고보조금의 의한 제주지역 사회복지 재정지원이 2010년부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증가, 청년실업의 팽배, 비정규직의 증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문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등과 같은 문제가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의 사회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구 목적

-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운용 방향 및 문제점을 고찰함.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재정 수요 증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함.
- 제주지역의 복지수요 특성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함.

##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 제주지역 사회복지 각 부문별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분권교부세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지역의 대응 방안 제시

## 4. 연구방법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문헌조사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짐. 문헌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은 기술적(descriptive) 방법에 의해 설명하였음.
-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방법에 의존하였음.

## 5. 연구의 기대효과

- 분권교부세 폐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활용자료 제공
- 도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재정 확충을 통해 삶의 질적 향상
-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재정 정책 수립과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 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sup>1)</sup>

#### 가. 분권교부세 자원배분 비중 및 수요구조

#####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경위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능이양합동심의회(1991)의 활동 후 각종 사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됨.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짐.
- 이 정비 방안에 의해 보건복지부 67개 사업 5,959억원, 건설교통부 7개 사업 1,331억원, 문화관광부 24개 사업 356억원, 해양수산부 16개 사업 157억원 등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9,581억원이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2005년 당시 지방정부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건수 기준으로는 44.9%, 금액 기준으로는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국고보조사업 138개 중에서 67개 사업(5,959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71개 사업(4조 3,409억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었음.
- 지방정부에 이양된 67개 사무의 사회복지분야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었음. 사회복지분야별로 지방이양 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유지 사무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와 보건 분야 사무는 계속 기관위임사무

---

1) 보건복지부(2008),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방안」

##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의 형태로 유지되면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대폭적으로 사무에 대한 권한과 재정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특히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 분야가 사무건수나 예산 규모 측면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책임의 이양 수준이 높음.

〈표 2-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지방이양 실적

(단위: 건, 억원)

분야별		합계	공공 부조	일반사 회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모자 복지	보건
지방이양 사업	건수	67	3	7	24	13	11	3	6
	예산	5,959	108	1,092	1,761	1,621	903	66	408

자료: 보건복지부(2008)

### 2)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

-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도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이양사무의 규모를 기준으로 내국세 수입의 0.83%로 책정됨. 분권교부세 수입을 내국세 수입의 증감률에 연동되도록 한 이러한 결정은 2005년 이후에 발생한 신규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함.
- 지난 4년간 내국세 평균 증가율은 8.6%에 불과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지방이양사업의 세출 증가율은 17.2%를 기록하였음. 특히,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0.5%를 기록하였음.

<표 2-2>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평균	'01	'02	'03	'04	'05
내국세 증가율	9.8	3.6	13.3	12.5	5.1	8.3
총 이양사업비 증가율	17.0	18	24	17	11	16
사회복지사업(67개) 증가율	20.5	26	22	17	18	19

자료: 보건복지부(2008)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05년도 예산배분 현황에 의하면 특별·광역시  
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시 분청 부담은 50.8%에서 56.2%로, 자치구  
부담은 8.9%에서 11.3%로 증가함. 또한 도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도 분청 부담은 20.6%에서 16.0%로 감소한 반면, 시·군 부담은  
26.4%에서 45.6%로 대폭 증가함(보건복지부, 2008).
- 정부는 2005년 이후 재원규모, 수요산정 대상사업 유형 분류, 수요산정  
항목 구분, 수요산정 방법, 재원교부 체계 등을 <표 2-3>과 같이 개편  
하였음.
  - 2006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11% 증가시켜 0.94%  
로 상향 조정됨.
  -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은 현재의 분권교부제도 하에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있으  
므로 분권교부세 재원 0.83% 중 0.21%가 이 사업들의 재원 비중  
이라고 보고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별도로 재원을 배  
분토록 하였음. 그리고 2006년부터 분권교부세율 인상에 따라 확  
보되는 1,180억원 전액을 이들 3개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였음.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는 분권교부세를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  
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피하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도(道)의 경우에도 분권교부세를 도 본청으로 일괄교부하고, 시·도비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도비를 확보토록 하였음.

〈표 2-3〉 지방이양사무 주요 제도개편 내용

구분	제도 개편 내용
재원 규모(법정률)	내국세의 0.83%(2005) → 내국세의 0.94%(2006) - 인상분(0.11%) 전액 사회복지 수요에 배정
수요산정 대상사업 유형 분류	경상적 수요: 74(05)→77(06)→80(07)→92(08) 비경상적수요(일반수요): 39(05)→41(06)→45(07)→35(08) 비경상적수요(특정수요): 36(05)→31(06)→24(07)→22(08)
수요산정 항목 구분	사회복지: 3개 항목(2005) → 4개 항목(2006) 문화관광: 2개 항목(2005) → 3개 항목(2006)
수요산정 방법	- 수요산정기준: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 평균→전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액(2006) - 교부액 조정: 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조정률 폐지 및 재정력지수 반영 도입(2006) - 경상적 수요 배분기준: 재정수요액 기준 70%, 재정력 기준 30% (2006) -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 광역 20%, 기초 80%→특별·광역시 30%, 도 70%(본청 14%, 시군 56%)(2006)→도 70%(본청 3.5%, 시군 66.5%)(2006)→도 70%(본청 5%, 시군 65%)(2008)/총인구,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재정력 등 분야별 배분비율 조정(2006, 2008)
재원 교부체계	- 당해 자치단체 직접교부(시도, 시군구)→특별·광역시 본청 일괄교부, 도 본청과 시군으로 교부(2006)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 본청으로 교부(2006)

자료: 보건복지부(2008)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의 증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짐.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사회복지비 비중의 지속적 확대(2005년 10.6% → 2006년 12.4% → 2007년 19.4%)

→ 22.1%)하였고, 사회복지비 관련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에 사회복지균형수요보정 항목을 도입하였음.

- 2008년의 경우 사회복지균형수요액 비중이 전체 기준재정수요액의 1.9%를 점하고 있음.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인센티브 항목의 하나로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항목을 신설하였음. 이 제도는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동종의 자치단체의 평균 비중보다 큰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화·복지분야 지출 예산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종합부동산세 수입으로 재산세 세수감소분을 보전한 후 남은 잔여 재원(균형재원)의 25%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지방분권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로 통합될 예정임.

## 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운영 현황

### 1) 분권교부세 자원배분 분석

-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분권교부세의 약 70%가 <표 2-4>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재원으로 할당되었음.

〈표 2-4〉 전국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표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분 권 교 부 세	총액	8,454	10,065	11,385	12,595	
	사회 복지 분야	금액	5,310	6,713	7,835	8,792
		비중	62.8	66.7	68.8	69.8

자료: 보건복지부(2008) 재정리

- 사회복지분야에 교부되는 분권교부세 재원은 정상적 수요와 비정상적 수요(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됨. <표 2-5>와 같이 2008년 예산기준으로 67개 사업 중 비정상적 수요는 7개 사업에 불과하나 전체 재원의 50% 정도가 배정됨.

〈표 2-5〉 지방이양사업의 수요 유형 및 예산배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계	정상적 수요				비정상적수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	일반수요	특정수요
사업	69	10	20	9	13	8	7
예산	8,793	809	748	1,295	1,467	91	4,384
비중	100	9.2	8.5	14.7	16.7	1.0	49.9

자료: 보건복지부(2008) 재정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sup>2)</sup> 이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이양사업 관련 분권교부세는 2007년 260억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29억원이었음.
  -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분권교부세와는 달리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2008년 51.8%,

2) 본 연구에서는 예산 통계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계층구조가 일원화된 2007년 이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 2009년을 비교하였음.

2009년에는 22.8% 증가하고 있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남.

-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부담에 의한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2007년 561억원, 2008년 786억원, 2009년 890억원임.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연도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금액	561억원	786억원	890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	40.1%	13.2%
분권교부세	금액	260억원(46%)	329억원(42%)	329억원(37%)
	전년대비 증가율	-	26.5%	0%
지방비부담	금액	301억원(54%)	457억원(58%)	561억원(63%)
	전년대비 증가율	-	51.8%	22.8%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표 2-7>과 같이 2007년 197억원, 2008년 248억원, 2009년 232억원으로 나타남. 2008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음. 이 사업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2007년 247억원, 2008년 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9%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 감소하였음.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 예산도 2008년에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606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4.7% 감소한 517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임.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총계 (=A+B)	444억원	606억원	517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	36.5%	△14.7%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소계 (A)	197억원 (44%)	248억원 (41%)	232억원 (44.9%)
	전년대비 증가율	-	25.9%	△6.5%
지방비부담	소계 (B)	247억원 (56%)	358억원 (59%)	285억원 (55.1%)
	전년대비 증가율	-	44.9%	△20.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 2)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규모 변화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양 전에 비해 이양 후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양 전후 3년간 총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양 전은 4.2%였으나 이양 후는 8.1%로 나타남.
-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는 이양 전 11.1%였으나 이양 후는 19.8%로 대폭 증가하였음.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경우는 이양 전 18.5%였으나 이양 후는 22.0%로 나타남.
- 특히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예산 및 사회복지 전체예산에 비해서도 그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예산변동 현황

(단위: 백억원, %)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예산	예산	9,112	9,753	9,889	10,796	11,547	11,199
	3년평균증가율	4.2			8.1		
사회복지분야	예산	865	943	1,067	1,289	1,532	1,728
	3년평균증가율	11.1			19.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92	104	130	168	192	225
	3년평균증가율	18.5			22.0		

자료: 보건복지부(2008)

## 2.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분석

### 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역별 예산분석 결과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액과 정부 간 분담비율을 광역자치단체 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표 2-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07년 기준 서울이 6,172억원, 경기도 3,445억원, 충남 2,760억원 순임. 서울특별시는 시 부담분이 81.9%로 가장 컸고,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부담비율은 부산시가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치구 부담비율은 대구시와 울산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의 경우는 시·군의 부담비율이 40%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기도는 51.1%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32.4%로 가장 낮았음. 도의 부담비율은 강원도가 33.9%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는 7.1%로 가장 낮음.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부담이 47.6%, 도 자체 부담이 52.4%로 나타남. 제주는 광주(50.8%), 울산(48.1%)에 이어 세 번째로 중앙정부 부담을 높게 확보하고 있음.

〈표 2-9〉 2007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시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시도별	전체예산액	분권교부세	시·도	시·군·구
서울	6,172	12.4	81.9	5.9
부산	1,631	35.6	57.3	7.1
대구	1,081	42.5	40.9	16.6
인천	815	34.3	51.1	14.5
광주	552	50.8	38.3	10.8
대전	610	46.4	40.0	13.5
울산	418	48.1	35.7	16.2
경기	3,445	26.0	23.0	51.1
강원	1,204	34.0	33.9	32.4
충북	988	44.7	20.8	34.5
충남	2,760	26.5	7.1	66.1
전북	1,362	43.9	22.8	33.3
전남	1,206	46.1	15.2	38.8
경북	1,358	40.1	20.5	39.4
경남	1,665	42.7	18.9	38.4
제주	413	47.6	52.4	0
전체	25,680 억원	30.9 %	40.3 %	28.8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2008)

## 나. 사업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유형별 예산분석 결과

## 1) 지방이양사업 범주별 세부사업 구분

- 2005년 이후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정상적 수요와 비정상적 수요로 구분한 뒤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표 2-10>과 같음. 총 52개 사업으로 구성된 정상적 수요 사업은 노인복지 10개, 장애인복지 20개, 아동복지 9개, 기타 복지 13개이며, 15개의 비정상적 수요는 일반수요 8개, 특정수요 7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0〉 지방이양사업 세부사업 구분

구분		세부사업(67개 사업)
경상적 수요 (52개)	노인복지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li> <li>●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li> <li>●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li> <li>●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li> </ul>
	장애인복지 (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생활가정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li> <li>●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li> <li>●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li> <li>●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li> <li>●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li> <li>●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장애인가가복지센터 운영</li> <li>●장애인지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지업재활시설 운영</li> <li>●장애인체육관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li> <li>●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li> <li>●청각장애인가동달팽이관수술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지원</li> </ul>
	아동복지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결식아동급식</li> <li>●결연기관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시설 운영 ●입양기관 운영</li> </ul>
	기타 복지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보건인력개발 ●사회복귀시설 운영</li> <li>●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li> <li>●모부자복지시설 운영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자립정착금</li> <li>●미혼모 중간의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li> <li>●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쪽방생활자 지원</li> <li>●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li> </ul>
비경상적 수요 (15개)	일반수요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공공보건사업</li> <li>●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li> <li>●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li> <li>●지역봉사사업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li> </ul>
	특정수요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시설 운영</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비구입)</li> <li>●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운영</li> <li>●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08)

2) 사업부문별 현황

가) 노인복지부문 사업

□ 전국

-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표 2-11> 과 같이 2007년 현재 경로당 운영(227개 지방자치단체)과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224개 지자체)이었으며, 경로식당무료급식(212개 지자체), 노인건강진단(217개 지자체)도 200여개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음.

<표 2-11> 전국 노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경상 수요	경로당 운영	234	92,877	234	102,457	227	110,446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	151	35,034	165	49,153	192	79,692
	노인복지회관운영	90	35,188	108	47,448	113	58,301
	경로식당무료급식	212	27,354	214	33,410	212	33,530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	229	16,129	230	18,472	224	19,526
	노인일거리사업마련	192	1,742	181	1,699	165	8,26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26	4,139	36	5,802	45	7,762
	노인건강진단	231	794	229	881	217	4,299
	경로당활성화	57	1,764	69	4,041	111	4,203
	치매상담센터운영	140	1,156	144	1,195	127	1,759
비 경상 수요	노인시설운영	164	187,658	178	243,419	174	301,266
	노인복지회관신축	33	52,088	27	26,981	23	41,225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2	858	22	624	20	1,093

자료: 보건복지부(2008)

- 대부분의 사업은 점차 시행 지자체가 늘고 있었으나, 노인일거리사업 마련,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사업의 시행 지자체는 줄어들고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시행 지자체가 2005년 151개에서 2007년 192개로 증가했으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지자체는 26개에서 45개로, 경로당활성화사업 시행 지자체도 57개에서 111개로 증가하였음.
- 예산 규모로는 노인시설 운영이 3,01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상사업 중에는 경로당운영 1,104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796억원, 노인복지회관운영 583억원, 경로식당무료급식 335억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 195억원 순임.
- 3년간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은 노인일거리사업마련, 노인건강진단, 경로당활성화사업임.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의 경우 지자체당 평균 사업비가 2005년 2.32억원에서 2007년 4.15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노인시설 운영도 지자체당 평균 사업비가 11.44억원에서 17.3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부문 예산은 <표 2-12>와 같이 2007년 4,092백만원, 2008년 4,121백만원, 2009년 4,587백만원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와 11.3%를 기록함.
- 노인복지부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증가율은 2008년 2%, 2009년 50%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방비 부담의 증가율은 오히려 2009년에는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개별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분권교부세 예산이 증가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이 준 반면 분권교부세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는 지방비가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음. 예

산규모가 큰 사업은 <표 2-11>의 전국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제주도에서도 <표 2-12>와 같이 노인시설운영, 경로당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임.

- 경상 수요 중 2009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과 경로당 운영사업으로 각각 22.5억원과 11.4억원임. 경상수요 사업 중 분권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한 분야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건강진단,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에서 나타났음. 반면에 증가한 분야는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치매상담센터운영 사업임. 이 가운데 분권교부세 증가와 함께 지방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과 치매상담센터운영 사업 두 곳임. 그러나 2007년 이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모두가 감소한 사업은 없음.
- 비경상 수요사업 중 노인시설운영 사업은 2007년 13.2억원, 2008년 15.9억원, 2009년 24.7억원으로 노인복지부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특히 지방비 부담이 전년 대비 2008년과 2009년 각각 46%와 7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표 2-12> 제주 노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내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예산	4,092,671		4,121,090 (0.7%)		4,587,357 (11.3%)		
		1,341,218	2,751,453	1,367,202	2,753,888	2,053,429	2,533,928	
	증가율			2	0	50	-8	
경상 수요	경로당운영	예산	481,600	543,600	257,347	782,038	516,692	627,781
		증가율			-47	44	101	-20
	경로당활성화 사업	예산	26,610	20,000	31,280	19,330	25,305	25,305
		증가율			18	-3	-19	31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	118,150	127,960	101,520	196,380	148,950	148,950
		증가율			-14	53	47	-24
	노인건강진단	예산	7,510	6,730	10,000	4,200	7,100	7,100
		증가율			33	-38	-29	69
	노인복지회관 운영	예산	33,790	85,905	61,943	69,229	65,586	47,586
		증가율			83	-19	6	-31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예산	34,400	51,400	35,200	50,600	42,900	42,900
		증가율			2	-2	22	-15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예산	474,418	1,514,848	634,840	1,245,145	931,877	1,319,287
		증가율			34	-18	47	6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	96,190	294,950	129,600	302,400	216,000	216,000
		증가율			35	3	67	-29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예산	58,550	96,060	95,472	74,566	85,019	85,019
		증가율			63	-22	-11	14
	치매상담센터 운영	예산	10,000	10,000	10,000	10,000	14,000	14,000
		증가율			-	-	40	40
비경 상 수 요	노인시설운영	예산	7,595,950	5,607,401	7,672,449	8,199,658	10,446,585	14,210,069
		증가율			1	46	36	73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	-	-	291,298	1,268,702	-	-
		증가율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예산	-	-	-	-	-	-
		증가율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 나) 장애인 복지사업

### □ 전국

- 2007년 현재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138개 지자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136개 지자체), 주간보호시설운영(129개 지자체),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126개 지자체), 장애인생활시설운영(103개 지자체), 공동생활가정운영(102개 지자체) 등에 10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의료 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체육관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사업,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는 매우 적음.
- 2007년 예산 규모면에서 볼 때, 장애인 복지관운영 예산이 2,62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은 2,266억원, 직업재활시설운영이 367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80억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이 174억원으로 나타남. 2005년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조사됨.

<표 2-13> 전국 장애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경상 수요	장애인복지관운영	87	54,636	98	62,469	111	262,6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18	20,653	121	24,604	138	36,78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03	8,762	111	11,135	129	18,015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104	9,041	124	11,697	136	17,444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84	5,953	94	7,181	126	11,153
	공동생활가정운영	83	5,047	85	5,788	102	10,350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37	3,070	49	4,158	63	6,383
	의료재활시설운영	9	2,052	9	2,141	12	5,287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36	2,572	39	3,061	51	5,088
	장애인특별운송사업	11	673	15	828	51	5,088
	장애인체육관운영	10	673	10	718	15	1,909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0	-	5	168	15	1,732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5	182	7	270	30	1,437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18	460	18	410	43	1,262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10	816	11	938	14	1,19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7	465	6	447	8	509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0	-	1	600	1	395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0	-	0	-	5	106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37	758	52	817	69	831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6	140	2	27	3	66
비 경 상 수 요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00	176,208	107	200,665	103	226,633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49	35,995	35	22,741	60	14,75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31	1,053	24	2,092	28	1,168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3	1,548	4	4,209	7	1,091

자료: 보건복지부(200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은 <표 2-14>와 같이 2007년 6,971백만원, 2008년 7,298백만원, 2009년 7,299백만원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4.7%와 0%를 기록함.
- 장애인복지부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증가율은 2008년 5%, 2009년 31%로 대폭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방비의 경우, 2008년에는 5%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무려 17% 감소하여 전체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증가율 정체를 초래함.
- <표 2-14>에 나와 있는 개별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분권교부세 예산이 증가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이 준 반면 분권교부세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증액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부담 모두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및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사업은 모두 감소하였음.
  - 경상 수요 중 2009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으로 44.9억원이며 이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8억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5.5억원임.
  - 경상수요 사업 중 분권교부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분야는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405%),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181%),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146%),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84%),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42%) 사업 등임.
  - 분권교부세의 증가와 달리 대부분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 중 큰 폭으로 줄어든 사업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50%),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28%),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27%) 등임.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표 2-14> 제주 장애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내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예산	6,970,564		7,297,765 (4.7%)		7,298,549 (0)	
	증가율	2,482,440	4,488,124	2,605,157	4,692,608	3,418,139	3,880,410
공동생활가정운영	예산	115,640	87,140	116,200	91,152	121,176	127,720
	증가율			0	5	4	40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예산	76,570	186,208	76,570	195,406	135,988	142,752
	증가율			-	5	78	-27
시각장애인재활 지원센터운영	예산	-	-	-	-	-	-
	증가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예산	14,000	21,000	-	-	-	-
	증가율			-100	-100		
의료재활시설운영	예산	85,670	144,110	85,670	157,866	91,768	128,343
	증가율			-	10	7	-19
장애인정보화지원 센터운영	예산	-	-	-	-	-	-
	증가율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예산	33,300	33,290	33,300	35,620	34,460	34,460
	증가율			-	7	3	-3
장애인해피콜봉사 센터운영	예산	-	-	-	-	-	-
	증가율						
장애인다기보호 시설운영	예산	102,570	83,430	102,570	95,352	98,961	104,305
	증가율			-	14	-4	9
장애인복지관운영	예산	1,318,200	2,617,602	1,422,036	2,700,694	2,057,364	2,431,213
	증가율			8	3	45	-1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예산	-	-	-	-	-	-
	증가율						
장애인가족복지 센터운영	예산	39,780	123,591	39,780	73,461	56,620	3,082
	증가율			-	-41	42	-96
장애인지각보호 시설운영	예산	212,440	194,630	281,559	279,379	248,459	298,356
	증가율			33	44	-12	7
장애인지업재활 시설운영	예산	371,720	655,821	337,562	713,072	325,315	353,686
	증가율			-9	9	-4	-50
장애인체육관운영	예산	-	-	-	-	-	-
	증가율						
정신지체인자립 지원센터운영	예산	26,060	66,455	26,060	69,693	47,876	49,957
	증가율			-	5	84	-28
지체장애인편의 시설센터운영	예산	23,160	74,700	23,160	78,126	65,064	65,064
	증가율			-	5	181	-17
청각장애인수화 통역센터운영	예산	47,630	178,347	47,630	186,257	116,943	123,327
	증가율			-	4	146	-34
청각장애인가동 달팽이관수술	예산	3,630	8,470	990	2,310	5,000	5,000
	증가율			-73	-73	405	116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지원	예산	12,070	13,330	12,070	14,220	13,145	13,145
	증가율			-	7	9	-8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예산	3,130,490	2,342,963	3,457,668	2,961,823	2,476,401	5,199,123
	증가율			10	26	-28	76
장애인복지관기능 보강	예산	-	-	199,110	327,792	185,740	178,594
	증가율					-7	-46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지원	예산	-	-	-	-	-	-
	증가율						
장애인체육관기능 보강	예산	-	-	-	-	-	-
	증가율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 비경상 수요사업 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2007년 54.7억원, 2008년 64.2억원, 2009년 76.8억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부문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특히, 지방비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08년 26%, 2009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달리 2009년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사업의 분권교부세(△7.7%)와 지방비(△46%) 부담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되었음.

#### 다) 아동복지사업

##### □ 전국

- 아동복지사업 11개 가운데 아동급식(227개 시·군·구), 가정위탁양육지원(217개 시·군·구), 소년소녀가장 지원(211개 시·군·구)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아동시설이용 사업과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사업은 각각 126개, 11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임.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결연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0개 내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음.
- 아동복지사업은 <표 2-15>와 같이 지난 3년간 규모와 예산 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의 경우는 시행 지자체는 2006년 207개에서 211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2006년 46억 7천4백만원에서 2007년 32억 6천5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표 2-15> 전국 아동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경상 수요	아동시설운영	118	102,212	117	114,285	126	133,919
	아동급식	234	86,939	234	108,025	227	119,517
	가정위탁양육지원	202	10,077	203	12,253	217	14,293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2	1,470	110	1,699	119	3,272
	소년소녀가장지원	208	5,125	207	4,674	211	3,265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9	698	7	859	14	2,053
	결연기관운영	2	476	2	502	2	423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3	199	3	213	1	127
	입양기관운영	13	191	13	215	17	379
비 경상 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6	39	0	-	2	2,590
	결연기관PC구입비	1	19	1	6	0	-

자료: 보건복지부(200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복지부문 예산은 <표 2-16>과 같이 2007년 7,616백만원, 2008년 8,011백만원, 2009년 7,945백만원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5.2%와 △0.8%를 기록함.
- 아동복지부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증가율은 전년대비 2008년 11%였으나 전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정체를 보임. 지방비의 경우도 2008년에는 0%, 2009년도에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부문 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표 2-16>에 나와 있는 개별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예산이 증가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이 준 반면 분권교부세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증액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소년소녀가장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부담 모두 감소하였음.

##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 경상 수요 중 2009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으로 48.6억원이며 이어서 결식아동급식 33.5억원, 아동시설운영 32.8억원임. 경상수요 사업 중 분권교부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분야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209%),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48%), 결연기관운영(43%) 등임.
-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 사업에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52%), 소년소녀가장지원(30%), 결연기관운영(20%)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결식아동급식사업은 전년대비 21% 지방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상 수요사업 2개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사업에는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부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연기관PC구입비 사업은 2008년 분권교부세만 25억원 지원되었으나 2009년 10억원으로 줄어들자 지방비에서 10억원을 부담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이 2009년도에 배정되어 있음.

<표 2-16> 제주 아동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내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예산	7,616,177		8,011,377(5.2%)		7,945,057(△0.8%)		
		3,537,150	4,079,027	3,931,199	4,080,178	3,920,894	4,024,163	
	증가율			11	0	-0	-1	
경상수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예산	131,710	96,210	131,040	196,560	172,200	172,200
		증가율			-1	104	31	-12
	가정위탁 지원센터운영	예산	64,490	94,490	67,290	126,753	99,772	104,988
		증가율			4	34	48	-17
	결식아동 급식	예산	1,379,390	2,034,370	2,121,288	1,390,800	1,677,450	1,677,450
		증가율			54	-32	-21	21
	결연기관운영	예산	49,010	91,010	50,516	94,440	72,478	75,895
		증가율			3	4	43	-20
	소년소녀 가장지원	예산	63,000	63,000	42,000	42,000	29,400	29,400
		증가율			-33	-33	-30	-30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예산	8,000	37,000	6,800	44,200	21,000	21,000
		증가율			-15	19	209	-52
	아동보호전문 기관운영	예산	233,790	232,850	232,695	242,016	237,355	248,670
		증가율			-0	4	2	3
	아동시설운영	예산	1,593,010	1,415,337	1,263,650	1,929,957	1,596,803	1,679,360
		증가율			-21	36	26	-13
	입양기관운영	예산	11,500	11,510	13,420	13,452	13,436	14,200
		증가율			17	17	0	6
비경상수요	아동보호전문 기관설치	예산	-	-	-	-	-	-
		증가율						
	결연기관PC 구입비	예산	3,250	3,250	2,500	-	1,000	1,000
증가율				-23	-100	-60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라) 기타 사회복지부문

□ 전국

-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부문 사업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05년과 2006년에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234개가 시행하였으나 2007년에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 그 밖에 2007년의 경우 사회복지관운영사업 147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26개,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지출사업과 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 사업도 각각 134개, 141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음. 비경상수로 분류된 지역봉사사업도 120개 지자체가 참여 중에 있음.
- 예산 규모로는 <표 2-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복지관 운영이 1,147억원으로서 가장 크며, 이어서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91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 141억원, 모자복지시설운영 126억원, 노숙자보호 119억원 순임.
- 대부분 사업의 연도별 예산 증가의 폭은 소폭이나마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공보건인력개발, 사회복지관기능보강, 중소도시보건소신축, 공공보건사업,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사업들은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전국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참가수	예산
경상 수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234	176,708	234	186,995	195	181,068
	사회복지관운영	130	63,742	134	71,265	147	114,743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14	14,400	116	16,101	126	19,153
	사회복지시설운영	63	9,048	70	11,854	74	14,110
	모자복지시설운영	48	9,799	50	11,128	56	12,623
	노숙자보호	29	4,813	27	4,694	40	11,912
	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	185	5,313	164	5,332	134	5,361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73	3,253	170	3,965	141	5,088
	대도시방문보건사업	33	3,250	37	3,596	33	3,942
	공공보건인력개발	132	1,854	123	1,957	58	1,205
	쪽방생활자지원	6	627	5	530	6	838
	모자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29	551	31	636	35	895
	미혼모중간의집운영	8	478	10	566	9	660
	비경 상 수 요	정신요양시설운영	47	46,439	48	46,982	45
사회복지관기능보강		80	13,636	78	15,600	88	13,303
중소도시보건소신축		5	4,882	5	4,823	2	3,140
지역봉사사업		164	1,536	154	1,507	120	2,449
공공보건사업		21	1,233	28	2,082	16	1,216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92	898	46	398	44	489

자료: 보건복지부(200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타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표 2-18>과 같이 2007년 5,906백만원, 2008년 6,292백만원, 2009년 6,391백만원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6.5%와 1.6%를 기록함.
- 기타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2008년 분권교부세가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으나 지방비 부담은 29% 감소하였음. 2009년 분권교부세는 전년

대비 43% 감소하고 지방비 부담은 38% 증가하였음. <표 2-18>에 나와 있는 개별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예산이 증가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이 준 반면 분권교부세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증액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비경상수요 부문 중 정신요양시설운영 사업은 2008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모두 각각 33%와 40%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각각 15%와 11%씩 감소하였음.

- 기타 부문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경상수요 중 사회복지관운영 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7.1억원과 17.6억원, 이어서 비경상수요 중 정신요양시설운영에 각각 15.4억원과 13.4억원이 배정되었음.

- 2009년 기타 부문의 예산 배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분권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임. 2008년 지방비 배정이 없었던 사업 중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모부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등에 2009년 신규 지방비가 배정됨.

- 2008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큰 사업은 공공보건인력개발(763%), 모부자복지시설운영(601%), 사회복지관운영(569%),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166%), 노숙자보호(163%), 미혼모중간의집운영(121%) 등으로 나타남.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표 2-18> 제주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내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예산	5,905,840		6,292,333(6.5%)		6,390,742(1.6%)		
	증가율	1,056,820	4,849,020	2,843,427	3,448,906	1,615,814	4,774,928	
경상 수요	공공보건인력개발	예산	712	1,648	9,220	600	5,147	5,177
	증가율			169	-29	-43	38	
	사회복지시설운영	예산	122,628	114,868	139,863	110,349	125,105	131,863
		증가율			14	-4	-11	19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예산	151,220	25,910	201,140	-	109,700	109,700
		증가율			33	-100	-45	
	노숙자보호	예산	-	-	117,063	29,266	73,164	77,115
		증가율					-38	163
	대도시방문보건 사업	예산	-	-	3,960	-	1,980	1,980
		증가율					-50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예산	219,200	388,962	597,171	48,249	322,709	338,466
		증가율			172	-88	-46	601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자립청탁금	예산	10,000	10,000	20,000	-	10,000	10,000
		증가율			100	-100	-50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예산	22,220	29,810	42,535	12,858	27,696	28,390
		증가율			91	-57	-35	121
	사회복지관운영	예산	482,180	1,179,934	1,577,923	135,155	856,369	904,558
		증가율			227	-89	-46	569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인건비	예산	-	2,984,338	-	3,079,093	-	3,079,093
		증가율				3		-
쪽방생활자지원	예산	-	-	-	-	-	-	
	증가율							
업무보조공익 근무요원인건비	예산	-	-	-	-	-	-	
	증가율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예산	48,660	113,550	134,552	33,336	83,944	88,586	
	증가율			177	-71	-38	166	
정신요양시설운영	예산	579,552	551,530	768,712	770,448	652,580	687,819	
	증가율			33	40	-15	-11	
사회복지관기능 보강	예산	-	-	-	-	-	-	
	증가율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예산	-	-	-	-	-	-	
	증가율							
지역봉사사업	예산	4,150	520	20,270	2,770			
	증가율			388	433			
공공보건사업	예산	3,050	8,359	-	-			
	증가율			-100	-100			
푸드뱅크운영 장비 지원	예산	-	-	-	-	-	-	
	증가율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2009) 재정리

### 3.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sup>3)</sup>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 중인 사회복지 분권교부세는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가. 제1안: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 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
-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부족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확보에 대한 강제가 없어 지자체의 복지예산 확보 곤란 현상 심화

#### 나. 제2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 현재 지방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67개 사회복지사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사무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 전국최저 수준(National minimum)이나 전국표준서비스 수준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단계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 외부효과 또는 지역 간 누출효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 책임을 분담할 경우 과소공급 또는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 이 대안의 핵심은 타 지역 입소자 과다 및 국가시책에 따른 시설운영비용의 급증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노인·장애인·정신 생활시설사업을 국

3)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2009.3.26).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제도 개선방안」

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집약됨. 이 세 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3개 생활시설사업은 생활시설의 특징상 소재지 자치단체주민에 대한 현지성이 미약함.
  -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중 무연고자가 주 입소대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하는 전국최저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셋째, 3개 생활시설은 입소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시설의 소재지 간에 괴리가 존재하여 생활시설 소재지의 재정 부담이 과다하게 초래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넷째, 3개 생활시설사업은 특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해당 시설사업비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권교부세제도(비경상적 특정사업수요사업비 산정방법)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3개 생활시설사업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지방이양의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최소한도의 국고환원을 통해 현행 분권교부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음.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는 3개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계상 및 지출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국비 및 지방비)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일부 사업만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2010년 분권교부세제도 폐지 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하여 나머지 64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복지재원 확보(약 900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됨.

다. 제3안: 전체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의 범위를 67개 지방이양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더라도 이를 과거와 같은 단위사업별 특정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를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기적으로는 포괄보조방식을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묶어 주는 ‘미니포괄보조금(mini block grant)’으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망라하는 ‘복지포괄보조금 제도로 발전시켜 나감.
  - 둘째, 포괄보조금제도는 기존의 개별 보조금 대상사업을 그대로 두고 단가도 개별적으로 계산하되, 일단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간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보조금’ 방식보다는 유사사업을 통합하되 관련 보조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사업들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개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보조 금액을 결정함.
- 현행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사례와 지방이양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제도는 <표 2-19>에서 제시된 바처럼, ‘일반복지사업계정’과 ‘특정복지사업계정’으로 구분하는 운영임.
  - 첫째, 일반복지사업계정: 각 사업계열별로 총액을 정하고 계열별 복지수요를 반영한 산식에 의해 시·도예산총액을 산출하여 배분함.
  - 둘째, 특정복지사업계정: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생활시설운영

사업 계열 및 기능보강사업계열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예산 책정.

〈표 2-19〉 포괄보조금 도입 시 계정의 설계(안)

구분 범주		세부사업
일반복지 사업계정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장애인복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	◦가정위탁양육지원 ◦결식아동급식 등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기타복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노숙자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특정복지 사업계정	생활시설 운영사업	◦노인시설 운영 ◦아동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자료: 보건복지부(2008)

**라. 제4안: 분권교부세 제도의 일정기간 존속**

- 상기한 개선 방안이 원활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불교부단체에 대한 복지재원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일정기간(3~5년 등)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임.

**마. 제5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원제도를 지방교부세제도와는 별도의 가칭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근거 법률(예, 사회복지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함.
- <표 2-20>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1.43%를 재원으로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하는 경우임.

<표 2-20> 내국세 1.43% 산정근거

(단위: 억원)

구분	'08 내국세 (A)	'08 사회복지재원 규모				비율 (E/A)
		분권교부세의 약 69.8%(B)	국고보조율 (47.2%) (C)	부동산교부세 (D)	계 (E=B+C+D)	
예산	1,339,901	8,793	3,567	6,755	19,115	1.4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9.3) 재정리

- \* '08년 분권교부세(내국세의0.94%): 1조 2,595억원
- \* '08년 사회복지 이양사업의 예산 추정치(2조 6,190억원) 대비 분권교부세율은 33.6%이고, 이양 직전 국고보조율은 47.2%로서 분권교부세율을 국고보조율 수준으로 회복(33.6% → 47.2%)하기 위해 약 3,567억원의 추가재원 소요
- \* '08년 균형재원 추계(부동산교부세<sup>4)</sup> → 세수감소분): 2조 7,021억원

○ 사회복지교부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별 교부금 산정은 자치단체별 교부액을 정상적 수요와 비정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정상적수요 :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의 특징이 강한 사업
  - \*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등 산정
- 비정상적수요 : 생활시설운영사업 및 기능보강 등 지역별로 특이적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과 성과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

○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및 성과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함.

4) 세재개편 전 부동산 교부세는 3조 7,021억원 정도였으나 2009년 세제 개편 후 약 1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바.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

- 이미 지방이양을 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 취지에 역행하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불과함. 사회복지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복지재정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책임은 분권화하고, 재정책임은 중앙정부로 집권화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함.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추가적 재정투입 없이 현재의 재원배분구조를 변경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재원 규모는 내국세의 1.43%로 정하여 복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함.

## 4.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관련 몇 가지 문제점

### 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급증

-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이양 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하였고, 지방비 부담률은 52.8%에서 65.6%로 증가
- 지방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16.4%('02년~'07년)로 동기간 총예산 증가율 7.3%를 크게 상회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 증가
- 최근 3년 동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야에서 20.2%의 높은 예산증가율이 발생하였으나,
  - 이양 후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내국세 0.94%)은 내국세 평균 증가율(9.6%)에 연동되어 이양사업의 재정지출수요와 분권교부세 수입간의 격차확대로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중

##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대도시 자치구의 복지예산 증가 심각
  - ※ 복지예산비율('07): 광역시 자치구 40.3%, 특별시 자치구: 25.6%, 시: 14.5%, 군: 13.2%

### 나. 지역별 복지시설의 불균형 분포

-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 ※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22개가 충남(11), 경기도(6), 경북(5)에 편중
- 특히,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반발하며 정산 필요성 주장(경기도)
  - ※ 타지역 주민 입소율 조사( '08. 5. 27. ~ ' 08. 7. 3.): 장애인 25.61%, 정신요양 30.62%, 노인 10.4%
  - ※ 특히, 일부 시·도에서 타지역 주민 입소율 심각
    - (장애인 시설) 경북 44%, 충북 38%, 경기 37%, 서울 35% 등
    - (정신요양시설) 대전 55%, 충남 48%, 충북 46%, 경기 37% 등

### 다. 지방교부세 운용상의 문제

- (분권교부세의 경우) 경상적 수요 산정공식 및 비경상적 수요 반영과정에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소요 미충족
  - 측정단위가 부적절하고 복지시설 지역간 격차조정기능 부재
    - ※ (예) 경상적 수요의 산식에서 시설 수만 반영하고 시설 내 수용인원이나 종사자 수 미반영
  - 전년도 시설현황으로 산정함에 따라 신규시설 투자가 어려움
- (보통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비중을 지속 확

대하여 왔으나 용도 특정이 없는 지방교부세 성격으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재정 확충 체감도 미약

-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상 전체 수요 대비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 '05년 9.4%, '06년 11.18%, '07년 17.22%, '08년 20.0%

-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중부세 수입 균형재원 배분시 사회복지 수요를 25% 반영하도록 개선('08년) 되었으나, 사회복지 용도를 특정하지 않아 지자체 복지재정부담 감소에 실질적 대책이 안됨.

#### 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복지재원 감소

- 중부세 개편('08.9.23.)과 중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08.11.13.)은 사회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 가중
  - '09년 축소되는 사회복지예산 반영분은 약 5,500억원 규모로 추정  
※ '09년 중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1조 3천억원과 위헌 판결 관련 세수 감소와 환급액 5천억원을 합한 1조 8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09년 목적예비비로 1조 8,600억원을 편성하여 보전

#### 마. 분권교부세 폐지(09.12.31)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문제점

- 분권교부세 폐지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광역 2개, 기초자치단체 시 8개, 자치구 69개)에서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 보장이 불가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 자원부족 문제 심화 예상.

##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복지수요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09년. 12. 31.)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확충 방향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에 한정되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혹은 전자메일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음.
- 조사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종사하여 복지기관 혹은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대표자(원장, 관장, 센터장 등) 혹은 실무 총괄하는 실무자(사무국장, 사무처장, 팀장 등)를 대상으로 하였음.
- 최종 조사대상자는 「2009년 제주사회복지편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09)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한부모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복지 등의 복지시설(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 혹은 총괄 실무자를 전체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음.
  - 아동·청소년복지 기관(시설)은 아동양육, 아동단기보호, 아동보호치료, 아동·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총 8개 시설 가운데 6개 시설이 무작위로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지역아동센터는 제주지역 전체에 지역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총 34개 가운데 6개 센터가 최종 선정됨.
  -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 미혼모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보호, 여성관련 단체 등으로 나타나 총 6개 가운데 3개 시설이 최종 선정됨.
  - 노인복지기관(시설)은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 노인관련단체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70개 시설 가운데 10개 시설(기관)이 무작위로 최종 표출됨.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생활,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장애인직업재활, 특수학교, 장애인관련단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총 68개 시설(기관) 가운데 12개 시설이 최종 조사대상 시설로 선정됨.
  - 지역복지에는 종합사회복지, 지역자활, 자원봉사, 지역사회복지단체, 푸드뱅크, 상담기관 등 관련 시설(기관)이 총 43개가 있는데 9개 시설(기관)이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40개 사회복지시설(기관)로부터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됨.
  - 최종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 이용되었음.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복지기관(시설)의 유형, 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이용자수이고, 그리고 종속변인에는 재정지원 규모, 재정충당 방법, 복지재정 정도, 예산부족 이유, 향후 재정충당 계획 여부 및 방법, 자체 재정운영 중·장기 계획 여부 및 방법,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여부, 그리고 재정 독립 분야 등임.
  -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6일 ~ 7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됨.

## 2.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 가. 조사대상 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연구에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최종 응답 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에 잘 나타나 있음.
- 조사 응답 사회복지기관 혹은 시설 유형별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기관(시설)이 11개(2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이 10개(25.0%), 지역복지기관(시설) 9개(22.5%), 아동청소년복지기관(시설)이 6개(15.0%), 그리고 여성·가족복지기관(시설)이 4개(10.0%)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설립된 기간을 보면, 10년 이하가 전체 시설 가운데 20개를 차지하여 절반에 이르고, 나머지는 11년~20년 이하 8개(20.0%), 21년~30년 이하 7개(17.5%), 그리고 31년 이상이 5개(12.5%)로 나타남.
  - 특히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복지기관(시설)이 많이 설립된 사실은 아마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수요의 증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라서 복지기관 혹은 시설들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응답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현재 근무하면서 실제로 급료를 받는 유급직원수 분포를 보면, 10명 이하 기관(시설)이 17개(4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1명 이상이 11개(27.5%), 11명~20명 이하가 8개(20.0%), 31명~40명 이하가 3개(7.5%), 그리고 21명~30명 이하가 1개(2.5%)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유급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가 63% 정도로 나타남.

〈표 3-1〉 응답 복지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기관(시설) 유형별	아동청소년복지기관(시설)	6	15.0
	노인복지기관(시설)	11	27.5
	장애인복지기관(시설)	10	25.0
	지역복지기관(시설)	9	22.5
	여성·가족 복지기관(시설)	4	10.0
설립연도별	10년 이하	20	50.0
	11년 ~ 20년 이하	8	20.0
	21년 ~ 30년 이하	7	17.5
	31년 이상	5	12.5
유급직원수	10명 이하	17	42.5
	11명 ~ 20명 이하	8	20.0
	21명 ~ 30명 이하	1	2.5
	31명 ~ 40명 이하	3	7.5
	41명 이상	11	27.5
수용이용자수	50명 이하	26	65.0
	51명 ~ 100명 이하	12	30.0
	101명 이상	2	5.0
수용 외 이용자수	50명 이하	28	70.0
	51명 ~ 100명 이하	4	10.0
	101명 ~ 150명 이하	3	7.5
	151명 이상	5	12.5
합 계		40	100.0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시설에 수용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26개 시설(6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명~100명 이하가 12개(30.0%), 그리고 101명 이상이 2개(5.0%)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시설에는 수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에 와서

###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28개 시설(7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1명 이상이 5개(12.5%), 51명~100명 이하가 4개(10.0%), 그리고 101명~150명 이하가 3개 시설(기관)로 7.5%를 차지하였음.

- <표 3-2>는 복지기관(시설)에 따른 기관특성(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 이용자수)에 대해 교차분석 한 결과를 나타냄. 전체적으로 볼 때, 설립연도는 10년 이하가 많고, 유급직원수는 10명 이하가 많으며, 수용 및 수용외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복지기관(시설)의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지기관(시설)의 수용이용자수로 나타남( $P < 0.05$ ).
- 따라서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시설)에는 50명 이하의 이용자가 기관(시설)에 수용되는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기관(시설)에는 이용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도 있음.

<표 3-2> 기관(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별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아동 청소년 복지기관	노인 복지 기관	장애인 복지 기관	지역 복지 기관	여성 가족 복지기관	합 계
설립연도 $\chi^2=16.642$ P=0.164 N=40	10년 이하	3(7.5)	5(12.5)	7(17.5)	3(7.5)	2(5.0)	20(50.0)
	11년~20년 이하	1(2.5)	2(5.0)	2(5.0)	3(7.5)	.	8(20.0)
	21년~30년 이하	.	4(10.0)	1(2.5)	2(5.0)	.	7(17.5)
	31년 이상	2(5.0)	.	.	1(2.5)	2(5.0)	5(12.5)
유급직원수 $\chi^2=24.155$ P=0.086 N=40	10명 이하	3(7.5)	2(5.0)	3(7.5)	6(15.0)	3(7.5)	17(42.5)
	11명~20명 이하	3(7.5)	.	2(5.0)	3(7.5)	.	8(20.0)
	21명~30명 이하	.	1(2.5)	.	.	.	1(2.5)
	31명~40명 이하	.	2(5.0)	1(2.5)	.	.	3(7.5)
	41명 이상	.	6(15.0)	4(10.0)	.	1(2.5)	11(27.5)
수용 이용자수 $\chi^2=18.163$ P=0.020* N=40	50명 이하	4(10.0)	2(5.0)	9(22.5)	8(20.0)	3(7.5)	26(65.0)
	51명~100명 이하	2(5.0)	8(20.0)	.	1(2.5)	1(2.5)	12(30.0)
	101명 이상	.	1(2.5)	1(2.5)	.	.	2(5.0)
수용외 이용자수 $\chi^2=19.251$ P=0.083 N=40	50명 이하	5(12.5)	9(22.5)	7(17.5)	5(12.5)	2(5.0)	28(70.0)
	51명~100명 이하	.	.	1(2.5)	1(2.5)	2(5.0)	4(10.0)
	101명~150명 이하	1(2.5)	2(5.0)	.	.	.	3(7.5)
	151명 이상	.	.	2(5.0)	3(7.5)	.	5(12.5)

\*P<0.05

#### 나. 복지재정 지원 기관 및 재정지원 규모

-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규모를 살펴보면(표 3-3. 참고), 중앙정부로부터 1억원~5억원 미만의 지원을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받은 시설(기관)은 14개 기관(35.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1억원 미만이 7개로 17.5%를 차지하고, 또한 5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관(시설)도 7개로 17.5%를 차지하였음. 그렇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기관)도 12개(30.0%)로 나타났음.

〈표 3-3〉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5천만원 미만	4	10.0
5천만원~1억원 미만	3	7.5
1억원~2억원 미만	3	7.5
2억원~3억원 미만	5	12.5
3억원~4억원 미만	5	12.5
4억원~5억원 미만	1	2.5
5억원 이상	7	17.5
해당사항 없음	12	30.0
합 계	40	100.0

- 조사 대상 복지시설(기관)이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규모는 <표 3-4>에 잘 나타나 있음.
- 1억원 미만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시설)은 16개로 4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억원~5억원 미만이 13개(32.5%), 5억원~10억원 미만 7개(17.5%), 그리고 10억원 이상 3개(7.5%)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1개 기관(시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5천만원 미만	9	22.5
5천만원~1억원 미만	7	17.5
1억원~3억원 미만	8	20.0
3억원~5억원 미만	5	12.5
5억원~7억원 미만	4	10.0
7억원~10억원 미만	3	7.5
10억원 이상	3	7.5
해당사항 없음	1	2.5
합 계	40	100.0

-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응답 기관(시설) 분포를 살펴 보면(표 3-5. 참고), 1천만원 미만이 14개로 35.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0개(25.0%), 10억원 이상이 5개(12.5%), 그리고 5천만원~1억원 미만 3개(7.5%) 순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민간기관(예컨대,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기관(시설)이 8개로 20.0%를 차지하였음.

〈표 3-5〉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1천만원 미만	14	35.0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0	25.0
5천만원~1억원 미만	3	7.5
1억원 이상	5	12.5
해당사항 없음	8	20.0
합계	40	100.0

- 따라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은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는 재정 규모는 1억원 미만이 67.5%를 차지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구나 전혀 지원받지 않는 기관도 20.0%로 이르고 있음. 그 만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기관(시설)에 대한 분포를 보면(표 3-6. 참고), 1천만원 미만의 후원을 받는 기관(시설)이 12개로 30.0%, 또한 1천만원~5천만원 미만도 12개(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1억원 이상은 8개(20.0%),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개(7.5%)로 나타났음.

〈표 3-6〉 개인독지가(혹은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규모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5백만원 미만	6	15.0
5백만원~1천만원 미만	6	15.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6	15.0
3천만원~5천만원 미만	6	15.0
5천만원~7천만원 미만	1	2.5
7천만원~1억원 미만	2	5.0
1억원 이상	8	20.0
해당사항 없음	5	12.5
합계	40	100.0

- 특히 2008년도에 개인후원자 혹은 독지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기관(시설)이 5개로 12.5%를 차지하였음.
- 사회복지기관(시설)별 - 아동·청소년복지기관(시설), 노인복지기관(시설), 장애인복지기관(시설), 지역복지기관(시설), 여성·가족복지기관(시설) - 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와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3-7>에 나타났음.

<표 3-7> 기관(시설)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단위: 개, %)

구 분		아동 청소년 복지 기관	노인 복지 기관	장애인 복지 기관	지역 복지 기관	여성 가족 복지 기관	합 계
중앙정부 지원 $\chi^2=12.089$ $P=0.147$ $N=28$	1억원 미만	3 (10.7)	2 (7.1)	1 (3.6)	1 (3.6)	.	7 (25.0)
	1억원~5억원 미만	1 (3.6)	3 (10.7)	4 (14.3)	2 (7.1)	4 (14.3)	14 (50.0)
	5억원 이상	1 (3.6)	4 (14.3)	.	2 (7.1)	.	7 (25.0)
지방정부 지원 $\chi^2=9.120$ $P=0.332$ $N=39$	1억원 미만	2 (5.1)	5 (12.8)	4 (10.3)	2 (5.1)	3 (7.7)	16 (41.0)
	1억원~5억원 미만	2 (5.1)	2 (5.1)	2 (5.1)	6 (15.4)	1 (2.6)	13 (33.3)
	5억원 이상	2 (5.1)	3 (7.7)	4 (10.3)	1 (2.6)	.	10 (25.6)
민간후원 기관 $\chi^2=20.794$ $P=0.008^{**}$ $N=32$	1천만원 미만	3 (9.4)	8 (25.0)	.	3 (9.4)	.	14 (43.8)
	1천만원~1억원 미만	2 (6.3)	1 (3.1)	3 (9.4)	4 (12.5)	3 (9.4)	13 (40.6)
	1억원 이상	.	.	3 (9.4)	2 (6.3)	.	5 (15.6)
개인후원 $\chi^2=11.645$ $P=0.168$ $N=35$	1천만원 미만	1 (2.9)	.	4 (11.4)	4 (11.4)	3 (8.6)	12 (34.3)
	1천만원~5천만원 미만	2 (5.7)	5 (14.3)	3 (8.6)	2 (5.7)	.	12 (34.3)
	5천만원 이상	.	5 (14.3)	2 (5.7)	3 (8.6)	1 (2.9)	11 (31.4)

\*\*P<0.01

- 다양한 복지기관(시설)들 가운데 아동·청소년 및 노인복지기관(시설)은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지원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P<0.01).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 및 노인복지기관(시설)이 민간후원기관(시설)로부터 지역사회복지기관들 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음.
- 응답 사회복지기관(시설)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은 변인은 민간후원기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설립연도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3-8>에 있듯이, 설립연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민간후원기관 및 개인 후원자의 재정지원 규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음.

<표 3-8> 설립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단위: 개, %)

구 분		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년~30년 이하	31년 이상	합 계
중앙지원 $\chi^2=6.200$ P=0.401 N=28	1억원 미만	4(14.3)	.	2(7.1)	1(3.6)	7(25.0)
	1억원~5억원 미만	8(28.6)	3(10.7)	1(3.6)	2(7.1)	14(50.0)
	5억원 이상	3(10.7)	.	3(10.7)	1(3.6)	7(25.0)
지방지원 $\chi^2=4.799$ P=0.570 N=39	1억원 미만	10(25.6)	1(2.6)	3(7.7)	2(5.1)	16(41.0)
	1억원~5억원 미만	6(15.4)	4(10.3)	2(5.1)	1(2.6)	13(33.3)
	5억원 이상	3(7.7)	3(7.7)	2(5.1)	2(5.1)	10(25.6)
민간후원 기관 $\chi^2=5.890$ P=0.436 N=32	1천만원 미만	7(21.9)	2(6.3)	3(9.4)	2(6.3)	14(43.8)
	1천만원~1억원 미만	6(18.8)	2(6.3)	3(9.4)	2(6.3)	13(40.6)
	1억원 이상	2(6.3)	3(9.4)	.	.	5(15.6)
개인후원 $\chi^2=4.368$ P=0.627 N=35	1천만원 미만	7(20.0)	1(2.9)	2(5.7)	2(5.7)	12(34.3)
	1천만원~5천만원 미만	6(17.1)	2(5.7)	2(5.7)	2(5.7)	12(34.3)
	5천만원 이상	3(8.6)	4(11.4)	3(8.6)	1(2.9)	11(31.4)

- 사회복지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수별 복지재정 지원규모에 대한 교차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9>, 유급직원수가 적을수록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P<0.05). 따라서 복지기관(시설)의 유급직원수가 작으면 규모도 작고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이 수반할 것으로 보임. 그런 맥락에서 소규모 유급직원이 근무하

는 복지기관(시설)에도 개인후원에 의한 지원금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유급직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10명 이하	11명~20명 이하	21명~30명 이하	31명~40명 이하	41명 이상	합 계
중앙정부 지원 $\chi^2=8.179$ $P=0.416$ $N=28$	1억원 미만	3 (10.7)	1 (3.6)	1 (3.6)	1 (3.6)	1 (3.6)	7 (25.0)
	1억원~5억원 미만	5 (17.9)	4 (14.3)	.	2 (7.1)	3 (10.7)	14 (50.0)
	5억원 이상	1 (3.6)	2 (7.1)	.	.	4 (14.3)	7 (25.0)
지방정부 지원 $\chi^2=14.483$ $P=0.070$ $N=39$	1억원 미만	9 (23.1)	2 (5.1)	.	2 (5.1)	3 (7.7)	16 (41.0)
	1억원~5억원 미만	8 (20.5)	3 (7.7)	.	.	2 (5.1)	13 (33.3)
	5억원 이상	.	3 (7.7)	1 (2.6)	1 (2.6)	5 (12.8)	10 (25.6)
민간후원 기관 $\chi^2=6.979$ $P=0.539$ $N=32$	1천만원 미만	5 (15.6)	1 (3.1)	1 (3.1)	2 (6.3)	5 (15.6)	14 (43.8)
	1천만원~1억원 미만	6 (18.8)	3 (9.4)	.	.	4 (12.5)	13 (40.6)
	1억원 이상	1 (3.1)	2 (6.3)	.	.	2 (6.3)	5 (15.6)
개인후원 $\chi^2=16.133$ $P=0.041^*$ $N=35$	1천만원 미만	7 (20.0)	3 (8.6)	.	1 (2.9)	1 (2.9)	12 (34.3)
	1천만원~5천만원 미만	4 (11.4)	3 (8.6)	1 (2.9)	2 (5.7)	2 (5.7)	12 (34.3)
	5천만원 이상	2 (5.7)	1 (2.9)	.	.	8 (22.9)	11 (31.4)

\* $P < 0.05$

-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수용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수별 복지재정 지원규모에 대한 교차분석 한 결과를 보면(표 3-10. 참고),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수용되어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수가 적을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수용된 복지서비스 이용자수가 적을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적은 예산지원을 받는 경향을 엿 볼 수 있음.

〈표 3-10〉 수용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단위: 개, %)

구 분		50명 이하	51명~100명 이하	101명이상	합 계
중앙정부 지원 $\chi^2=7.000$ $P=0.030^*$ $N=28$	1억원 미만	5(17.9)	2(7.1)	.	7(25.0)
	1억원~5억원 미만	10(35.7)	4(14.3)	.	14(50.0)
	5억원 이상	1(3.6)	6(21.4)	.	7(25.0)
지방정부 지원 $\chi^2=6.617$ $P=0.158$ $N=39$	1억원 미만	11(28.2)	5(12.8)	.	16(41.0)
	1억원~5억원 미만	10(25.6)	3(7.7)	.	13(33.3)
	5억원 이상	5(12.8)	3(7.7)	2(5.1)	10(25.6)
민간후원 기관 $\chi^2=5.873$ $P=0.209$ $N=32$	1천만원 미만	6(18.8)	7(21.9)	1(3.1)	14(43.8)
	1천만원~1억원 미만	9(28.1)	3(9.4)	1(3.1)	13(40.6)
	1억원 이상	5(15.6)	.	.	5(15.6)
개인후원 $\chi^2=2.808$ $P=0.590$ $N=35$	1천만원 미만	9(25.7)	2(5.7)	1(2.9)	12(34.3)
	1천만원~5천만원 미만	7(20.0)	5(14.3)	.	12(34.3)
	5천만원 이상	6(17.1)	4(11.4)	1(2.9)	11(31.4)

\* $P < 0.05$ 

- <표 3-11>은 사회복지기관(시설)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기관 혹은 시설을 방문하여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수별 복지재정 지원규모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복지기관(시설)의 수용외 이용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수용외 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50명 이하	51명~100명 이하	101명~150명 이하	151명 이상	합 계
중앙정부 지원 $\chi^2=5.833$ P=0.442 N=28	1억원 미만	6(21.4)	.	1(3.6)	.	7(25.0)
	1억원~5억원 미만	7(25.0)	3(10.7)	1(3.6)	3(10.7)	14(50.0)
	5억원 이상	5(17.9)	1(3.6)	1(3.6)	.	7(25.0)
지방정부 지원 $\chi^2=2.272$ P=0.893 N=39	1억원 미만	13(33.3)	1(2.6)	1(2.6)	1(2.6)	16(41.0)
	1억원~5억원 미만	8(20.5)	2(5.1)	1(2.6)	2(5.1)	13(33.3)
	5억원 이상	6(15.4)	1(2.6)	1(2.6)	2(5.1)	10(25.6)
민간후원 기관 $\chi^2=8.018$ P=0.237 N=32	1천만원 미만	11(34.4)	1(3.1)	2(6.3)	.	14(43.8)
	1천만원~ 1억원 미만	7(21.9)	2(6.3)	.	4(12.5)	13(40.6)
	1억원 이상	3(9.4)	1(3.1)	.	1(3.1)	5(15.6)
개인후원 $\chi^2=4.070$ P=0.667 N=35	1천만원 미만	9(25.7)	2(5.7)	.	1(2.9)	12(34.3)
	1천만원~ 5천만원 미만	9(25.7)	.	1(2.9)	2(5.7)	12(34.3)
	5천만원 이상	6(17.1)	2(5.7)	1(2.9)	2(5.7)	11(31.4)

#### 다. 복지재정 총당 방법

- 2008년도에 조사대상 복지기관(시설)의 주요 예산 총당 방법은 <표 3-12>에 잘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경우가 21개 기관(시설)으로 5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경우가 11개(27.5%), 그리고 자체 수입사업(수익자 부담),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민간후원기관이 각각 2개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기타 사항으로 자체모금사업과 회원회비로 총당하는 기관(시설)이 2개로 5.0%를 차지함.
- 따라서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 과반수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가 복지재정 지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복지기관 예산 총당 방법

(단위: 개, %)

구분	빈도	비율
자체 수익사업(수익자부담)을 통하여	2	5.0
사회복지법인 전입금을 통하여	2	5.0
민간 후원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 기업, 시민단체 등)	2	5.0
중앙 정부의 지원	11	27.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1	52.5
기 타	2	5.0
합 계	40	100.0

라. 복지재정 충분 정도

- 응답 사회복지기관(시설) 가운데 29개(72.5%)가 복지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였고(표 3-13. 참고), 반면에 충분하다는 경우는 1개 기관(시설)(2.5%)에 불과하였음.

〈표 3-13〉 복지재정 충분 인식 정도

(단위: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부족하다	29	72.5
보통	10	25.0
충분하다	1	2.5
합 계	40	100.0

-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시설)들은 대다수가 현재 복지재정 상황에 대하여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재정 충분 정도와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3-14>에 잘 나타나 있음.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은 기관유형, 수용 이용자 그리고 수용외 이용자수임. 따라서 장애인복지 혹은 지역복지기관(시설)일수록( $P < 0.05$ ), 수용 이용자가 적을수록( $P < 0.05$ ), 그리고 복지시설에 수용외 이용자가 적을수록( $P < 0.05$ ) 시설(기관)의 복지재정 정도가 불충분한 경향을 보였음.

- 즉 복지기관(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복지재정의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규모가 작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복지기관은 재정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3-1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정도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부족하다	보통	충분하다	합계
기관유형 $\chi^2=17.948$ P=0.022* N=40	아동청소년복지기관	4(10.0)	1(2.5)	1(2.5)	6(15.0)
	노인복지기관	6(15.0)	5(12.5)	·	11(27.5)
	장애인복지기관	9(22.5)	1(2.5)	·	10(25.0)
	지역복지기관	9(22.5)	·	·	9(22.5)
	여성·가족 복지기관	1(2.5)	3(7.5)	·	4(10.0)
설립연도 $\chi^2=10.037$ P=0.123 N=40	10년 이하	17(42.5)	3(7.5)	·	20(50.0)
	11년~20년 이하	6(15.0)	1(2.5)	1(2.5)	8(20.0)
	21년~30년 이하	4(10.0)	3(7.5)	·	7(17.5)
	31년 이상	2(5.0)	3(7.5)	·	5(12.5)
유급직원수 $\chi^2=11.470$ P=0.176 N=40	10명 이하	14(35.0)	3(7.5)	·	17(42.5)
	11명~20명 이하	6(15.0)	1(2.5)	1(2.5)	8(20.0)
	21명~30명 이하	1(2.5)	·	·	1(2.5)
	31명~40명 이하	3(7.5)	·	·	3(7.5)
	41명 이상	5(12.5)	6(15.0)	·	11(27.5)
수용이용자 $\chi^2=10.565$ P=0.032* N=40	50명 이하	22(55.0)	3(7.5)	1(2.5)	26(65.0)
	51명~100명 이하	5(12.5)	7(17.5)	·	12(30.0)
	101명 이상	2(5.0)	·	·	2(5.0)
수용외 이용자 $\chi^2=14.974$ P=0.020* N=40	50명 이하	20(50.0)	8(20.0)	·	28(70.0)
	51명~100명 이하	3(7.5)	1(2.5)	·	4(10.0)
	101명~150명 이하	1(2.5)	1(2.5)	1(2.5)	3(7.5)
	151명 이상	5(12.5)	·	·	5(12.5)

\*P&lt;0.05

- 전체 응답 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 부족 이유들이 <표 3-15>에 잘 나타나 있음. 직원 인건비 상승이 13개(44.8%)로 복지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시설 운영비

상승이 8개(27.6%),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3개(10.3%), 그리고 외부로부터 후원금(지원금) 감소가 2개(6.9%)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타사항으로 회원회비 감소, 자체 수익의 감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등이 복지기관(시설)의 재정 부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표 3-15〉 복지재정의 부족 이유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직원 인건비 상승	13	44.8
시설 운영비 상승	8	27.6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3	10.3
외부로부터 후원금(지원금) 감소	2	6.9
기 타	3	10.3
합 계	29	100.0

- <표 3-16>은 기관유형, 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이용자수 변인과 복지재정 부족 이유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여기서 복지시설(기관)에 수용하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은 기관(시설)일수록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복지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엿볼 수 있음. 이러한 관련성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3-1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부족 원인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직원 인건비 상승	시설 운영비 상승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외부 후원금 감소	기 타	합 계
기관유형 $\chi^2=16.429$ P=0.423 N=29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1(3.4)	3(10.3)	.	.	.	4(13.8)
	노인복지기관	4(13.8)	.	1(3.4)	.	1(3.4)	6(20.7)
	장애인 복지기관	5(17.2)	3(10.3)	1(3.4)	.	.	9(31.0)
	지역복지기관	2(6.9)	2(6.9)	1(3.4)	2(6.9)	2(6.9)	9(31.0)
	여성·가족복지 기관	1(3.4)	.	.	.	.	1(3.4)
설립연도 $\chi^2=13.457$ P=0.337 N=29	10년 이하	7(24.1)	6(20.7)	2(6.9)	1(3.4)	1(3.4)	17(58.6)
	11년~20년 이하	5(17.2)	.	.	1(3.4)	.	6(20.7)
	21년~30년 이하	1(3.4)	1(3.4)	1(3.4)	.	1(3.4)	4(13.8)
	31년 이상	.	1(3.4)	.	.	1(3.4)	2(6.9)
유급직원수 $\chi^2=19.375$ P=0.250 N=29	10명 이하	5(17.2)	5(17.2)	1(3.4)	1(3.4)	2(6.9)	14(48.3)
	11명~20명 이하	1(3.4)	2(6.9)	1(3.4)	1(3.4)	1(3.4)	6(20.7)
	21명~30명 이하	.	.	1(3.4)	.	.	1(3.4)
	31명~40명 이하	2(6.9)	1(3.4)	.	.	.	3(10.3)
	41명 이상	5(17.2)	.	.	.	.	5(17.2)
수용 이용자수 $\chi^2=5.047$ P=0.753 N=29	50명 이하	8(27.6)	7(24.1)	3(10.3)	2(6.9)	2(6.9)	22(75.9)
	51명~100명 이하	3(10.3)	1(3.4)	.	.	1(3.4)	5(17.2)
	101명 이상	2(6.9)	.	.	.	.	2(6.9)
수용외 이용자수 $\chi^2=21.708$ P=0.041* N=29	50명 이하	9(31.0)	7(24.1)	.	1(3.4)	3(10.3)	20(69.0)
	51명~100명 이하	2(6.9)	.	.	1(3.4)	.	3(10.3)
	101명~150명 이하	.	.	1(3.4)	.	.	1(3.4)
	151명 이상	2(6.9)	1(3.4)	2(6.9)	.	.	5(17.2)

\*P&lt;0.05

마. 향후 재정 충당 계획

- 전체 응답 복지기관(시설) 가운데 34개(85.0%)가 앞으로 재정 충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그럴 의향이 없다는 기관은 6개(15.0%)로 나타났음 (표 3-17. 참고). 따라서 대다수 복지기관(시설)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음.
- 이처럼 사회복지기관(시설)들은 복지재정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정충당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표 3-17> 복지기관 재정충당 계획 여부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예	34	85.0
아니오	6	15.0
합 계	40	100.0

- <표 3-18>은 복지기관(시설)의 특성별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충당 계획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여러 변인들 가운데 유급직원수가 재정충당 계획 여부와  $P <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 따라서 복지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수가 적을수록 향후 재정충당 계획을 가질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유급직원수가 적은 복지기관(시설)은 특히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충당에 대한 계획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3-1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계획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기관유형 $\chi^2=5.767$ P=0.217 N=40	아동·청소년복지기관	6(15.0)	·	6(15.0)
	노인복지기관	10(25.0)	1(2.5)	11(27.5)
	장애인복지기관	9(22.5)	1(2.5)	10(25.0)
	지역복지기관	7(17.5)	2(5.0)	9(22.5)
	여성·한부모가족복지기관	2(5.0)	2(5.0)	4(10.0)
설립연도 $\chi^2=3.725$ P=0.293 N=40	10년 이하	17(42.5)	3(7.5)	20(50.0)
	11년~20년 이하	7(17.5)	1(2.5)	8(20.0)
	21년~30년 이하	7(17.5)	·	7(17.5)
	31년 이상	3(7.5)	2(5.0)	5(12.5)
유급직원수 $\chi^2=9.550$ P=0.049* N=40	10명 이하	11(27.5)	6(15.0)	17(42.5)
	11명~20명 이하	8(20.0)	·	8(20.0)
	21명~30명 이하	1(2.5)	·	1(2.5)
	31명~40명 이하	3(7.5)	·	3(7.5)
	41명 이상	11(27.5)	·	11(27.5)
수용 이용자수 $\chi^2=0.382$ P=0.826 N=40	50명 이하	22(55.0)	4(10.0)	26(65.0)
	51명~100명 이하	10(25.0)	2(5.0)	12(30.0)
	101명 이상	2(5.0)	·	2(5.0)
수용외 이용자수 $\chi^2=0.952$ P=0.813 N=40	50명 이하	24(60.0)	4(10.0)	28(70.0)
	51명~100명 이하	3(7.5)	1(2.5)	4(10.0)
	101명~150명 이하	3(7.5)	·	3(7.5)
	151명 이상	4(10.0)	1(2.5)	5(12.5)

\* P&lt;0.05

- 응답 복지기관(시설)이 향후 재정의 충당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3-19. 참고), 민간후원금 확보가 10개(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증액이 8개(23.5%), 기관(시설)의 자체 수익 사업 확충(서비스 이용자 부담) 6개(17.7%),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5개(14.7%), 그리고 복지법인 전입금 확대가 2개 기관(5.9%) 순

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타사항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활성화, 수익에 맞는 사업 운영 등을 들고 있음.

〈표 3-19〉 향후 재정 충당 방법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자체 수익 사업 확충(서비스 이용자 부담)	6	17.7
법인 전입금 확대	2	5.9
민간 후원금 확보	10	29.4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8	23.5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5	14.7
기 타	2	5.9
모르겠다	1	2.9
합 계	34	100.0

- 따라서 절반 이상의 복지기관(시설)은 민간 후원금 확보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증액을 통하여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기관(시설)의 적극적 노력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후원기관의 도움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의 특성별 요인(기관유형, 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 이용자수)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충당 방법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3-20>에 잘 나타나 있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표 3-20〉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방법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분		자체 수익 사업 확충	법인 전입금 확대	민간 후원금 확보	지방 정부의 지원 증액	중앙 정부의 지원 증액	기타	모르 겠다	합계
기관유형 $\chi^2=21.604$ P=0.603 N=34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	·	2 (5.9)	3 (8.8)	·	·	1 (2.9)	6 (17.6)
	노인복지기관	2 (5.9)	1 (2.9)	1 (2.9)	2 (5.9)	2 (5.9)	2 (5.9)	·	10 (29.4)
	장애인 복지기관	2 (5.9)	·	2 (5.9)	2 (5.9)	2 (5.9)	1 (2.9)	·	9 (26.5)
	지역복지기관	·	1 (2.9)	4 (11.8)	1 (2.9)	1 (2.9)	·	·	7 (20.6)
	여성·한부모 가족복지기관	1 (2.9)	·	1 (2.9)	·	·	·	·	2 (5.9)
설립연도 $\chi^2=13.843$ P=0.739 N=34	10년 이하	3 (8.8)	·	4 (11.8)	4 (11.8)	2 (5.9)	3 (8.8)	1 (2.9)	17 (50.0)
	11년~20년 이하	1 (2.9)	1 (2.9)	2 (5.9)	1 (2.9)	2 (5.9)	·	·	7 (20.6)
	21년~30년 이하	·	1 (2.9)	2 (5.9)	3 (8.8)	1 (2.9)	·	·	7 (20.6)
	31년 이상	1 (2.9)	·	2 (5.9)	·	·	·	·	3 (8.8)
유급직원수 $\chi^2=22.657$ P=0.540 N=34	10명 이하	2 (5.9)	1 (2.9)	3 (8.8)	2 (5.9)	2 (5.9)	·	1 (2.9)	11 (32.4)
	11명~20명 이하	·	·	4 (11.8)	3 (8.8)	·	1 (2.9)	·	8 (23.5)
	21명~30명 이하	·	·	·	1 (2.9)	·	·	·	1 (2.9)
	31명~40명 이하	2 (5.9)	·	·	1 (2.9)	·	·	·	3 (8.8)
	41명 이상	1 (2.9)	1 (2.9)	3 (8.8)	1 (2.9)	3 (8.8)	2 (5.9)	·	11 (32.4)
수용 이용자수 $\chi^2=15.496$ P=0.215 N=34	50명 이하	4 (11.8)	1 (2.9)	7 (20.6)	6 (17.6)	2 (5.9)	1 (2.9)	1 (2.9)	22 (64.7)
	51명~100명 이하	1 (2.9)	1 (2.9)	3 (8.8)	2 (5.9)	1 (2.9)	2 (5.9)	·	10 (29.4)
	101명 이상	·	·	·	·	2 5.9	·	·	2 5.9
수용외 이용자수 $\chi^2=14.958$ P=0.665 N=34	50명 이하	4 (11.8)	2 (5.9)	7 (20.6)	5 (14.7)	3 (8.8)	2 (5.9)	1 (2.9)	24 (70.6)
	51명~100명 이하	1 (2.9)	·	·	1 (2.9)	1 (2.9)	·	·	3 (8.8)
	101명~150명 이하	·	·	·	2 (5.9)	1 (2.9)	·	·	3 (8.8)
	151명 이상	·	·	3 (8.8)	·	·	1 (2.9)	·	4 (11.8)

**바. 재정 확충 방안**

- 복지기관(시설)의 가장 바람직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표 3-21. 참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증액이 20개(5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지원 증가 10개(27.8%), 민간후원기관(기업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단체 등) 참여 강화 3개(8.3%), 그리고 기관(시설)의 자체 수익 사업의 창출은 2개(5.6%)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복지기관(시설)의 회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기타 사항으로 제시됨.
- 따라서 응답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대다수가 가장 바람직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증액을 꼽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 기부 혹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방법을 재정 확충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표 3-21> 복지기관의 재정 확충 방안**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중앙정부의 지원 증가	20	55.6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증가	10	27.8
민간 후원기관 참여의 확대 강화	3	8.3
후원자 혹은 독지가의 사회적 기부 노력	.	.
기관(시설)의 수익 사업의 창출	2	5.6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	.
기 타	1	2.8
합 계	36	100.0

- 제주지역 복지기관(시설)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3-22. 참고), 복지기관에 대한 정기적 재정 운영 컨설팅 실시 방안이 19개(4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지기관(시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설)의 재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6개(15.0%), 외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강화 4개(10.0%),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활용한 인건비 절감 3개(7.5%)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컨설팅과 복지기관(시설)의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3-22〉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	3	7.5
복지기관(시설)의 재정(예산, 지출, 회계 등) 담당자 교육 강화	6	15.0
외부 기관으로부터 성과 평가 시스템 운영 강화	4	10.0
복지기관(시설)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정기적 컨설팅 실시	19	47.5
해당무 <sup>5)</sup>	8	20.0
합 계	40	100.0

사. 향후 재정 운영 방향

- 조사 응답 복지기관(시설)이 재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포를 보면(표 3-23. 참고), 먼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23개(57.5%)로 절반을 넘고 있고, 반면에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기관은 17개(42.5%)로 나타났음.

5)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응답이 아니고 복지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된 응답 내용이 해당무로 처리하였음.

〈표 3-23〉 재정 운영의 중·장기 계획 여부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있다	23	57.5
없다	17	42.5
합 계	40	100.0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은 향후 재정 운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가져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려는 기관이 60.0%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관(시설)은 앞으로 재정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의 특성별 요인(기관유형, 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 이용자수)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충당 방법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3-24>에 잘 나타나 있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통한 여러 시설개선을 해준다면 복지기관(시설)이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재정독립형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임.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복지기관(시설)은 재정 운영을 대부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 왔기 때문임.

〈표 3-2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자체 재정 운영 중·장기 계획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있 다	없 다	합 계
기관유형 $\chi^2=4.773$ P=0.311 N=40	아동청소년복지기관	3(7.5)	3(7.5)	6(15.0)
	노인복지기관	9(22.5)	2(5.0)	11(27.5)
	장애인복지기관	5(12.5)	5(12.5)	10(25.0)
	지역복지기관	5(12.5)	4(10.0)	9(22.5)
	여성·가족복지기관	1(2.5)	3(7.5)	4(10.0)
설립연도 $\chi^2=2.952$ P=0.399 N=40	10년 이하	13(32.5)	7(17.5)	20(50.0)
	11년~20년 이하	3(7.5)	5(12.5)	8(20.0)
	21년~30년 이하	5(12.5)	2(5.0)	7(17.5)
	31년 이상	2(5.0)	3(7.5)	5(12.5)
유급직원수 $\chi^2=2.829$ P=0.587 N=40	10명 이하	9(22.5)	8(20.0)	17(42.5)
	11명~20명 이하	4(10.0)	4(10.0)	8(20.0)
	21명~30명 이하		1(2.5)	1(2.5)
	31명~40명 이하	2(5.0)	1(2.5)	3(7.5)
	41명 이상	8(20.0)	3(7.5)	11(27.5)
수용이용자 $\chi^2=0.601$ P=0.741 N=40	50명 이하	14(35.0)	12(30.0)	26(65.0)
	51명~100명 이하	8(20.0)	4(10.0)	12(30.0)
	101명 이상	1(2.5)	1(2.5)	2(5.0)
수용외 이용자수 $\chi^2=1.846$ P=0.605 N=40	50명 이하	16(40.0)	12(30.0)	28(70.0)
	51명~100명 이하	2(5.0)	2(5.0)	4(10.0)
	101명~150명 이하	1(2.5)	2(5.0)	3(7.5)
	151명 이상	4(10.0)	1(2.5)	5(12.5)

- <표 3-25>는 응답 복지기관(시설)의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를 보여주고 있음. 가령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통한 여러 시설개선을 해주고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에 기반한 재정독립형 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은 10개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25.0%)로 나타나서 재정독립형 운영에 관심을 보였음. 반면에 재정독립형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인 복지기관(시설)은 30개(75.0%)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응답 복지기관(시설) 가운데 3/4이 재정독립형 운영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 반면에 1/4이 재정독립형으로 변화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음. 전체 조사대상 사회복지기관(시설) 가운데 25%가 향후 복지재정 운영 방향을 재정독립형으로 변화시킬 의향을 가진 사실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그 만큼 만성적 재정의존적 구조를 탈피하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5〉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예	10	25.0
아니오	30	75.0
합 계	40	100.0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의 특성별 요인(기관유형, 설립연도, 유급직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 이용자수)에 따른 향후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3-26>에 잘 나타나 있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기관유형 $\chi^2=6.343$ P=0.175 N=40	아동·청소년복지기관	1(2.5)	5(12.5)	6(15.0)
	노인복지기관	5(12.5)	6(15.0)	11(27.5)
	장애인복지기관	.	10(25.0)	10(25.0)
	지역복지기관	3(7.5)	6(15.0)	9(22.5)
	여성·한부모가족 복지기관	1(2.5)	3(7.5)	4(10.0)
설립연도 $\chi^2=1.048$ P=0.790 N=40	10년 이하	4(10.0)	16(40.0)	20(50.0)
	11년~20년 이하	3(7.5)	5(12.5)	8(20.0)
	21년~30년 이하	2(5.0)	5(12.5)	7(17.5)
	31년 이상	1(2.5)	4(10.0)	5(12.5)
유급직원수 $\chi^2=4.474$ P=0.346 N=40	10명 이하	4(10.0)	13(32.5)	17(42.5)
	11명~20명 이하	1(2.5)	7(17.5)	8(20.0)
	21명~30명 이하	.	1(2.5)	1(2.5)
	31명~40명 이하	.	3(7.5)	3(7.5)
	41명 이상	5(12.5)	6(15.0)	11(27.5)
수용이용자수 $\chi^2=0.718$ P=0.698 N=40	50명 이하	6(15.0)	20(50.0)	26(65.0)
	51명~100명 이하	3(7.5)	9(22.5)	12(30.0)
	101명 이상	1(2.5)	1(2.5)	2(5.0)
수용외 이용자수 $\chi^2=1.257$ P=0.739 N=40	50명 이하	8(20.0)	20(50.0)	28(70.0)
	51명~100명 이하	1(2.5)	3(7.5)	4(10.0)
	101명~150명 이하	.	3(7.5)	3(7.5)
	151명 이상	1(2.5)	4(10.0)	5(12.5)

- 재정독립형 복지시설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응답 복지기관(시설)이 가장 먼저 재정적 독립을 원하는 분야에 대한 분포를 보면(표 3-27. 참고), 인건비 자체 조달이 6개(6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 유지비와 프로그램 개발비가 각각 2개(20.0%)로 나타났음.

〈표 3-27〉 재정적 독립 우선 영역

(단위 : 개, %)

구 분	빈 도	비 율
인건비 자체 조달	6	60.0
시설 유지비	2	20.0
교육훈련비	·	·
프로그램 개발비	2	20.0
4대 사회보험 지급	·	·
퇴직금 적립	·	·
기 타	·	·
합 계	10	100.0

- 그러나 교육훈련비, 4대 사회보험 지급, 퇴직금 적립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독립 운영의 최우선 분야로 인식하지 않았음.

〈표 3-2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적 독립 분야 교차분석표

(단위 : 개, %)

구 분		인건비 자체조달	시설 유지비	프로그램 개발비	합계
기관유형 $\chi^2=10.222$ P=0.116 N=10	아동청소년복지기관	·	·	1(10.0)	1(10.0)
	노인복지기관	4(40.0)	1(10.0)	·	5(50.0)
	지역복지기관	2(20.0)	·	1(10.0)	3(30.0)
	여성 한부모가족 복지기관	·	1(10.0)	·	1(10.0)
설립연도 $\chi^2=10.000$ P=0.125 N=10	10년 이하	2(20.0)	·	2(20.0)	4(40.0)
	11년~20년 이하	3(30.0)	·	·	3(30.0)
	21년~30년 이하	1(10.0)	1(10.0)	·	2(20.0)
	31년 이상	·	1(10.0)	·	1(10.0)
유급직원수 $\chi^2=5.333$ P=0.255 N=10	10명 이하	14(35.0)	3(7.5)	·	17(42.5)
	11명~20명 이하	6(15.0)	1(2.5)	1(2.5)	8(20.0)
	41명 이상	5(12.5)	6(15.0)	·	11(27.5)
수용이용자 $\chi^2=2.222$ P=0.695 N=10	50명 이하	3(30.0)	1(10.0)	2(20.0)	6(60.0)
	51명~100명 이하	2(20.0)	1(10.0)	·	3(30.0)
	101명 이상	1(10.0)	·	·	1(10.0)
수용외이용자 $\chi^2=8.750$ P=0.068 N=10	50명 이하	6(60.0)	1(10.0)	1(10.0)	8(80.0)
	51명~100명 이하	·	1(10.0)	·	1(10.0)
	151명 이상	·	·	1(10.0)	1(10.0)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의 특성별 요인(기관유형, 설립연도, 유급직

###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원수, 수용이용자수, 수용외 이용자수)에 따른 향후 재정적 독립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3-28>에 잘 나타나 있음. 그러나 복지기관(시설)의 특성과 재정적 독립 분야(인건비 자체조달,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개발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4장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수행됨.
-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문제(예컨대, 재정지원 규모, 재정충당 방법, 향후 재정충당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복지재정 지원규모 및 재정 충당 방법, 복지재정 충분 정도 및 부족 이유, 그리고 향후 재정 충당 계획 및 방법,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끝으로 향후 복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동시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1. 요약 및 결론

#### 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4개 부문(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복지분야)으로 구분하여 주요 예산지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4장 결 론

### 1) 노인복지부문

- 전국의 경우, 노인시설 운영이 3,01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상사업 중에는 경로당운영 1,104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796억원, 노인복지회관운영 583억원, 경로식당무료급식 335억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95억원 순임. 3년간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은 노인일거리사업마련, 노인건강진단, 경로당활성화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과 경로당운영 사업으로 각각 22.5억원과 11.4억원임. 비경상 수요사업 중 노인시설운영 사업은 2007년 13.2억원, 2008년 15.9억원, 2009년 24.7억원으로 노인복지부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특히 지방비 부담이 전년 대비 2008년과 2009년 각각 46%와 7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장애인 복지부문

- 전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운영 예산이 2,62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은 2,266억원, 직업재활시설운영이 367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80억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174억원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경상적 수요사업은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으로 44.9억원이며 이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8억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5.5억원임. 비경상 수요사업 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2007년 54.7억원, 2008년 64.2억원, 2009년 76.8억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부문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3) 아동복지부문

- 전국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아동시설운영사업 1,339억원, 아동급식사업 1,195억원,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142억원으로 순임. 기타 사업은 그 규모가 상위 3개 사업에 비해 매우 작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 경상적 수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으로 48.6억원이며, 결식아동급식 33.5억원, 아동시설운영 32.8억원임. 비경상 수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사업에는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부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연기관PC구입비 사업은 2009년에 총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4) 기타복지부문

- 전국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이 1,147억원으로서 가장 크며, 이어서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91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 141억원, 모자복지시설운영 126억원, 노숙자보호 119억원 순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경상수요 중 사회복지관운영 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7.1억원과 17.6억원이며, 이어서 정신요양시설운영 사업(2008년 15.4억원, 2009년 13.4억원)임.

#### 나.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 제1안: 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
- 제2안: 현재 지방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67개 사회복지사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사무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 제4장 결 론

- 제3안: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의 범위를 67개 지방이양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제4안: 이상의 개선 방안이 원활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불교부단체에 대한 복지재원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일정기간(3~5년 등)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임.
- 제5안: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원제도를 지방교부세제도와는 별도의 (가칭)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근거 법률(예, 사회복지교부금법) 제정 필요함. 보건복지부는 제5안을 선호하며, 제주도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제5안이 유리함.

### 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 1) 일반적 특성

-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회복지기관(시설) 분포는 노인복지기관(시설) 11개(27.5%), 장애인복지기관(시설) 10개(25.0%), 지역복지기관(시설) 9개(22.5%), 그리고 여성가족복지기관(시설) 4개(10.0%)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설립연도는 10년 이하 20개(50.0%), 11년~20년 이하 8개(20.0%), 21년~30년 이하 7개(17.5%), 그리고 31년 이상이 5개(12.5%)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현재 근무하면서 실제로 급료를 받는 유급직원수 분포는 10명 이하 기관(시설)이 17개(42.5%), 11명~20명 이하가 8개(20.0%), 21명~30명 이하 1개(2.5%), 31명~40명 이하 3개(7.5%), 41명 이상 11개(27.5%)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수용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26개 시설(65.0%), 51명~100명 이하 12개(30.0%), 그리고 101명 이상이 2개(5.0%)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시설에는 수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기관(시설)에 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28개 시설(70.0%), 151명 이상 5개(12.5%), 51명~100명 이하 4개(10.0%), 그리고 101명~150명 이하가 3개 시설(기관)로 7.5%를 차지하였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설립연도는 10년 이하가 많고, 유급직원수는 10명 이하가 많으며, 수용 및 수용외 이용자수는 50명 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복지기관(시설)의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지기관(시설)의 수용이용자수로 나타남( $P < 0.05$ ).

## 2) 복지재정 지원 기관 및 재정지원 규모

- 중앙정부로부터 1억원~5억 미만의 지원을 받은 시설(기관)은 14개 기관(35.0%), 1억 미만이 7개로 17.5%, 5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관(시설) 7개로 17.5%를 차지하였음.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기관)도 12개 30.0%로 나타났다.
- 지방정부로부터 1억원 미만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시설)은 16개(40.0%), 1억원~5억원 미만 13개(32.5%), 5억원~10억원 미만 7개(17.5%), 그리고 10억원 이상 3개(7.5%)로 나타났다.
-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시설)은 1천만원 미만이 14개(35.0%),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0개(25.0%), 10억 이상이 5개(12.5%), 그리고 5천만원~1억원 미만 3개(7.5%)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관(예컨대,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등)으로 지원 받지 못한 기관(시설)이 8개로 20.0%를 차지하였음.

## 제4장 결 론

-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은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1억원 미만이 67.5%를 차지하였고, 더구나 전혀 지원 못 받은 기관도 20.0%로 이르고 있음. 그 만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재정 의존도가 높음.
-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기관(시설)은 1천만원 미만의 후원을 받는 기관(시설)이 12개(30.0%),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2개(30.0%), 1억원 이상 8개(20.0%),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개(7.5%)로 나타났음.
  - 특히 2008년도에 개인후원자 혹은 독지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기관(시설)이 5개로 12.%를 차지하였음.
- 아동·청소년 및 노인복지기관(시설)이 민간후원기관(시설)로부터 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들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음.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유급직원수가 적을수록 적은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복지기관(시설)의 유급직원수가 작으면 규모도 작고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이 수반할 것으로 보임.

### 3) 복지재정 충당 방법

- 제주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 충당 방법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경우가 21개(52.%), 중앙정부의 지원 경우가 11개(27.5%), 수입사업(수익자 부담),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민간후원기관이 각각 2개(5.0%)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 과반수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가 복지재정 지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복지재정 충분 정도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 충분 정도와 관련하여 ‘부족하다’는 복지기관(시설)은 29개(72.5%), 반면에 ‘충분하다’는 경우는 1개(2.5%)에 불과하였음.
- 장애인복지 혹은 지역복지기관(시설)일수록, 수용이용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복지시설에 수용외 이용자가 적을수록 시설(기관)의 복지재정 정도가 불충분한 경향을 보였음.
- 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 부족 이유를 보면, 직원 인건비 상승이 13개(44.8%), 시설 운영비 상승 8개(27.6%),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3개(10.3%), 그리고 외부로부터 후원금(지원금) 감소가 2개(6.9%)로 나타났다.
- 복지시설(기관)에 수용하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은 기관(시설)일수록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복지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엿 볼 수 있음.

#### 5) 향후 재정 충당 계획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향후 재정 충당 계획 여부를 보면, 34개(85.0%)가 앞으로 재정 충당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기관은 6개(15.0%)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수가 작을수록 향후 재정충당 계획을 가질 경향이 있음. 따라서 유급직원수가 적은 복지기관(시설)은 특히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충당에 대한 계획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재정의 충당 계획 내용은 민간기관 후원금 확보가 10개(29.4%),

## 제4장 결론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8개(23.5%), 복지기관(시설)의 자체 수익사업 확충(서비스 이용자 부담) 6개(17.7%),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5개(14.7%), 그리고 복지법인 전입금 확대가 2개(5.9%)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절반 이상의 복지기관(시설)은 민간후원금 확보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증액을 통하여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기관(시설)의 적극적 노력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후원기관의 도움이 요구됨.

### 6) 재정 확충 방안

- 복지기관(시설)의 가장 바람직한 재정 확충 방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증액이 20개(55.6%), 지방정부의 지원 증가 10개(27.8%), 민간후원기관(기업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단체 등) 참여 강화 3개(8.3%), 그리고 기관(시설)의 자체 수익 사업의 창출은 2개(5.6%)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대다수가 가장 바람직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증액을 꼽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 기부 혹은 자원봉사자 활용한 인건비 절감 방법을 재정 확충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제주지역 복지기관(시설)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분포를 보면, 복지기관에 대한 정기적 재정 운영 컨설팅 실시 19개(47.5%), 복지기관(시설)의 재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6개(15.0%), 외부기관으로부터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강화 4개(10.0%),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3개(7.5%)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컨설팅과 복지기관(시설)의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7) 향후 재정 운영 방향

- 복지기관(시설)이 재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여부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23개(57.5%)로 절반을 넘고 있고, 반면에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기관은 17개(42.5%)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의 복지기관(시설)은 향후 재정 운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가져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려는 기관이 60.0%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복지기관(시설)은 앞으로 재정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통한 여러 시설개선을 해준다면 과연 복지기관(시설)이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재정독립형 운영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재정독립형 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은 10개(25.0%)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독립형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인 복지기관(시설)은 30개(75.0%)임.
  - 전체 조사대상 사회복지기관(시설) 가운데 25%가 향후 복지재정 운영 방향을 재정독립형으로 변화시킬 의향을 가진 사실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함. 그 만큼 만성적 재정의존적 구조를 탈피하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독립형 복지시설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응답 복지기관(시설)이 재정적 독립을 원하는 사항은 인건비 자체 조달이 6개(60.0%), 그리고 시설 유지비와 프로그램 개발비가 각각 2개(20.0%)로 나타났다.
- 교육훈련비, 4대 사회보험 지급, 퇴직금 적립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독립 운영의 최우선 분야로 인식하지 않았음.

## 제4장 결 론

- 분권교부세 폐지('09. 12. 31 예정)에 따른 분권교부세 운영 방향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개편 방향은 대체로 분권교부세 제도의 일정기간 존속을 고려하고 있는 편임.
- 분권교부세 제도가 일정기간 존속하면 기존에 나타난 현상처럼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지원액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감소할 것임. 반면에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감소해 나가면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부담액을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라. 제주지역 복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

- 분권교부세 폐지(09. 12. 31)에 따른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운영 방향에 적합한 정책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이양사업 분석, 정부의 분권교부세개편 방향 논의,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원 방식이 포괄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제주의 복지재정 안정화와 확충에 기여함.
  -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사업 간 중복성 지원을 차단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함.
  -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함.
  - 장기적으로 재정독립형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양성하되, 재정자립도가 높은 복지기관(시설)의 일부 지원액을 재정자립이 낮은 영세 복지기관(시설)에 지원함.
  -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가칭, 사회복지교부금

법) 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정률화하는 방안이 있음.

## 2. 정책적 제언

### 가. 복지재정 규모의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배분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예산행태는 정책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 배분 보다는 전년도 수준 예산보전을 해주는 것임.
  - 특정한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면 지방비가 감소하며, 분권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비를 증가시켜 전년 수준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 나.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 세부사업에 예산을 개별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복지, 비경상수요 5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괄 배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사용에 자율성을 부여함.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 자율성을 사회복지기관에 부여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 간 중복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리하여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관리 시스템 정비 사업이 필요함. 이와 더

#### 제4장 결 론

불어 복지재정 전달체계의 수정 및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결국 복지재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복지체감지수의 증가가 요구됨.

-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시설)의 예산 세입·지출 그리고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정기적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서 시설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재정 충당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액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 다. 복지재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은 복지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출 운용을 보다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운영 주체는 예산 및 지출 문제를 단기적 차원의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사회복지기관(시설) 내에 재정 운영과 관련된 (가칭) 재정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가져 재정 운영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음.

#### 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시 ‘사회복지교부금제도’가 도입되도록 도의견을 제출함.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가칭, 사회복지교부금법) 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령률화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의 조례 제정이 사실상 열악한 지방재정, 중앙정부 예산지원 의존 및 복지정책 수립,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역량 부족, 사회복지재정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여성발전기금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주지역 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 필요

#### 마.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예산 편성시 복지수요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입안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각종 복지서비스 수요자 등과의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 예산편성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간에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필요함.

#### 바. 지역의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안정화 및 활성화

- 1997년 이후 제주지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의 미흡
  -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용없는 성장 지속,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대 사회복지

## 제4장 결론

지기금의 재원확충,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가칭)제주형 미래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민간부문(특히 기업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후원자 등)에 의한 복지재정 확충 노력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있음.

### 사. 지역의 복지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적극 모색

-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재정은 대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다른 재정 충당 방안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독립형으로 급격히 변화하기는 힘든 실정임.
-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재정독립형으로 성장·발전하기에 앞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정 증액, 민간기관의 후원금 확보, 자체 수입사업 확충(서비스 이용자 부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원확보가 어려운 제주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증액이 더욱 요구됨.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에산의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재정독립형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양성하되, 단 재정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재정독립형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지원해 주던 지원금을 재정자립이 아주 낮은 영세 복지기관(시설)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서 일부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으로 인증받아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 생산·판매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체 수익사업 창출로 인한 복지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복지기관(단체)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및 조직들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복지재원 확보와 더불어 복지재원의 재투자도 필요함.
-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 여성 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가 당면한 복지재정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특정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증가시켜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정독립형 복지기관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음.

## 참고문헌

- 곽채기.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방안.” 「2010년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pp. 25-100. 2009.
- 김중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pp. 159-185.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서울:보건복지가족부. 2008.
-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8.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9.
- 행정안전부. 「재정고」 2008.
- Harris, K. K. & Cole, W.E. *Sociology of Aging*. Houghton Mifflin. 1990.

□ 부 록 □

## 설 문 조 사 표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연구

## 면 접 조 사 표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지역의 복지수준의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접원이 귀하를 직접 찾아보어 자료수집에 협조를 부탁을 드릴 것이오니 성심껏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협조가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 분석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내용의 비밀이 절대로 보장됩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 7.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 (☎ 726-6145)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 향 진

**복지재정 분야**

1. 귀 기관(시설)은 2008년도에 중앙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① 5천만원 미만
- ② 5천만원 ~ 1억원 미만
- ③ 1억원 ~ 2억원 미만
- ④ 2억원 ~ 3억원 미만
- ⑤ 3억원 ~ 4억원 미만
- ⑥ 4억원 ~ 5억원 미만
- ⑦ 5억원 이상
- ⑧ 해당사항 없음

2. 귀 기관(시설)은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① 5천만원 미만
- ② 5천만원 ~ 1억원 미만
- ③ 1억원 ~ 3억원 미만
- ④ 3억원 ~ 5억원 미만
- ⑤ 5억원 ~ 7억원 미만
- ⑥ 7억원 ~ 10억원 미만
- ⑦ 10억 이상
- ⑧ 해당사항 없음

3. 귀 기관(시설)은 2008년도에 민간후원기관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혹은 기업 등)으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① 1천만원 미만
- ②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③ 5천만원 ~ 1억원 미만
- ④ 1억원 이상
- ⑤ 해당사항 없음

4. 귀 기관(시설)은 2008년도에 개인(독지가, 후원자 등)으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① 5백만원 미만
- ②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 ③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④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⑤ 5천만원 ~ 7천만원 미만
- ⑥ 7천만원 ~ 1억원 미만
- ⑦ 1억원 이상
- ⑧ 해당사항 없음

5. 귀 기관(시설)의 예산은 주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 ① 자체 수익사업(수익자 부담)을 통하여
- ② 사회복지법인 전입금을 통하여
- ③ 민간 후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 기업, 시민단체 등)
- ④ 중앙 정부의 지원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⑥ 개인 독지가 (혹은 후원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6. 귀 기관(시설)의 복지 재정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부족하다 (☞ 7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② 보통
- ③ 충분하다

7. 귀 기관(시설)의 재정 정도가 부족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번 문항 1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직원 인건비 상승
- ② 시설 운영비 상승
- ③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
- ④ 외부로부터 후원금 (지원금) 감소
- ⑤ 자체 수익사업 (예, 장갑, 비누 생산, 종이컵 등)의 수익 감소
- ⑥ 기관(시설)의 유료 서비스 이용자 감소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8. 귀 기관(시설)은 향후 재정 총당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9번으로)                      ② 아니오 (☞ 문항 10번으로)

9.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자체 수익 사업 확충 (서비스 이용자 부담 확대)
- ② 법인 전입금 확대
- ③ 민간 후원금 확보
- ④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 ⑤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 증액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⑦ 모르겠다

10. 귀 기관(시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 ②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증가하여야 한다
- ③ 민간 후원기관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④ 후원자 혹은 독지가들이 사회적 기부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 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기관(시설)의 수익 사업을 창출하여야 한다
- ⑥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1. 귀하는 기관(시설)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
- ② 복지기관(시설)의 재정 (예산, 지출, 회계 등) 담당 직원의 교육 강화
- ③ 외부 기관으로부터 성과 평가 시스템 운영 강화
- ④ 복지기관(시설)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정기적 컨설팅 실시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2. 귀 기관(시설)은 자체의 재정 운영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3. 귀 기관(시설)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을 해 준다면 서비스 수혜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재정독립형 복지시설(기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항 14번과 15번으로)      ② 아니오 (☞ 문항 16번으로)

14. 그렇다면 귀 기관(시설)은 재정 독립형으로 변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항 15번으로)      ② 없다

15. 귀 기관(시설)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재정적 독립을 할 생각입니까?

- ① 인건비 자체 조달
- ② 시설 유지비
- ③ 교육훈련비
- ④ 프로그램 개발비
- ⑤ 4대 사회보험 지급
- ⑥ 퇴직금 적립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일반 특성

16. 귀 기관(시설)은 어떤 유형의 복지 기관(시설)입니까?

- ①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시설)
- ② 노인복지기관(시설)
- ③ 장애인 복지기관(시설)
- ④ 종합사회복지관
- ⑤ 지역자활센터
- ⑥ 지역사회복지단체
- ⑦ 여성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부 록

---

17. 귀 기관이 설립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_\_\_\_\_ 년

18. 귀 기관(시설)의 유급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19. 귀 기관(시설)의 서비스 수용 및 제공 관련 인원은 몇 명입니까?

① 현재 기관(시설)에서 수용되어 서비스 받는 이용자 수 총 \_\_\_\_\_ 명

② 현재 기관(시설)에서 수용되지 않고 서비스 받는 이용자 수 총 \_\_\_\_\_ 명

20. 귀 기관(시설)은 종교로부터 후원받고 있습니까?

① 예 (☞ 문항 21번으로)      ② 아니오 (☞ 문항 22번으로)

21. 그렇다면 어떤 종교에서 후원받고 있습니까?

- ① 불교 (조계종 등)
- ② 원불교
- ③ 천주교
- ④ 개신교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2.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곳으로부터 후원받고 있습니까?

- ① 개인 독지가(혹은 후원자)
- ② 민간사회단체
- ③ 사회복지공동모금
- ④ 기업체
- ⑤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 ⑥ 중앙 정부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구진

책임연구원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복지수요 증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 및 운영 방향

---

인 쇄 일	2009. 7.
발 행 일	2009. 7.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한미기획출판(064-753-7891)

---

ISBN : 978-89-6010-096-1 93330